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613호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1614호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 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제1615호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제출되어 2020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그리고 의안번호 제1525호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제출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II.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1. 주요내용

#### 가. 세입·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조 8,365억 9천 5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조 9,680억 1천 1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685억 8천 4백만원임.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855억 3천 5백만원 및 사고이월액 3,019억 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11억 4천 3백만원임.

#### 나. 채권현재액

- 2019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807억 6천 5백만원으로 2018회계연도말 2,982억 9천 9백만원 보다 175억 3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다. 채무결산

- 2019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161억 7천 7백만원으로 2018회계연도말 1조 1,691억 4천 4백만원에 비해 8,529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라. 재무회계 결산

- 2019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5조 5,421억 2천 1백만원으로 2018회계연도말 15조 4,219억 5천 3백만원에 비해 1,201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자산 1조 3,913억 6천 2백만원, 투자자산 2,783억 4백만원, 유형자산 13조 8,679억 5천 2백만원, 무형자산 3억 3천 6백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41억 6천 7백만원임.

- 2019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1조 717억 4천 4백만원으로 2018회계연도말 1조 9,683억 7천 6백만원에 비해 8,966억 3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부채 1,476억 4천 4백만원, 장기차입부채 9,200억 8천 9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 40억 1천 1백만원임.

- 2019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14조 4,703억 7천 7백만원으로 2018회계연도말 13조 4,535억 7천 7백만원에 비해 1조 1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고정순자산 12조 8,910억 9천 7백만원, 특정순자산 496억 1천 1백만원, 일반순자산 1조 5,296억 7천만원임.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조 168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7,465억 6천 4백만원에 비하여 2,702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수익 10조 9,052억 1천 1백만원, 비용 9조 8,884억 1천 1백만원임.

## 2. 검토의견

### 가. 결산총괄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1조 1,946억 9천 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421억 4천 5백만원을 더한 11조 7,368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84억 3천 2백만원(11.9%)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1조 7,368억 4천 1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이 11조 8,365억 9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8%이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3억 4천 1백만원이 감소된 2억 3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7억 9천 4백만원이 감소된 129억 6천 6백만원임.

[표-1] 세입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수납		징수결정 대비수납	
						증감 (③-①)	수납률 (③/①)	증감 (③-②)	수납률 (③/②)
2019	11,736,841	11,849,791	11,836,595	230	12,966	99,754	100.8	△13,196	99.9
2018	10,488,409	10,926,900	10,912,569	571	13,760	424,160	104.0	△14,331	99.9
2017	9,921,584	9,966,167	9,951,120	401	14,646	29,536	100.3	△15,047	99.9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4%인 10조 9,680억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91.5%) 대비 1.9%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전년도 5.2%)인 4,874억 4천 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전년도 3.3%)인 2,813억 8천 9백만원임.

**[표-2] 세출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①	결산액 ② (②/①)	다음연도 이월액 ③ (③/①)	집행잔액 ④=①-②-③ (④/①)
<b>2019</b>	<b>11,194,696</b>	<b>542,145</b>	<b>11,736,841</b>	<b>10,968,011</b> <b>(93.4)</b>	<b>487,441</b> <b>(4.2)</b>	<b>281,389</b> <b>(2.4)</b>
2018	10,051,522	436,887	10,488,409	9,600,564 (91.5)	542,145 (5.2)	345,701 (3.3)
2017	9,596,337	325,247	9,921,584	8,999,045 (90.7)	436,887 (4.4)	485,652 (4.9)

- 한편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8,685억 8천 4백만원으로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 4,874억 4천만원(예산현액 대비 4.2%)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811억 4천 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3%)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698억 6천 1백만원보다 3,887억 1천 8백만원(50.5%) 감소함.

**나. 세입결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8%로 전년도(104.0%) 보다 3.2%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1조 8,497억 9천 1백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

1) 세입재원별 결산

- 세입재원별 결산액은 11조 8,365억 9천 5백만원으로, 이전수입이 87.1%, 자체수입 1.8%, 기타수입 11.1%로 구성되어 있음.
-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지난년도 보다 9,240억 2천 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이전수입은 6,869억 8천 8백만원(74.4%), 자체수입은 105억 4천 7백만원(1.1%) 증가하였고, 이월금은

3,599억 3백만원(39.0%) 증가하였음. 반면 지방교육채는 지난년도 기준 1,334억 4천만원을 발행하였으나 2019회계연도에서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음에 따라 세입결산액이 존재하지 않음.

- 이처럼 증가한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6,118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6조 4,785억 9천만원으로 전체 이전수입의 56.9%를 차지하였는바, 이 중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5,841억 9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도 전년도 보다 531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70억 4천 2백만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누리과정)은 183억 6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또한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비법정이전수입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서울상도유치원임차료지원, 꾸미고꿈꾸는학교화장실,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목적지정재원의 편성으로 전년도 보다 709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함.

- 이러한 세입 규모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이 인상(20.27%→20.46%)<sup>1)</sup>됨에 따라 이전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이 원인임.

다만, 이전수입의 결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7.1%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비율은 전년대비 1.1%감소(88.2%→87.1%)하였는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46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바, 이와 같은 재원의존도의 하락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증가에 따른 자체재원 비율의 상승에 따른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비중은 이전수입이 87.1%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1.8%에 불과한바,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은 세입구조 상 자체수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이 높은 재원의존도는 자칫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각종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적정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3] 전년대비 세입 결산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18			전년 대비 증감	
	예산현액 ①	수납액 ②	수납률 (③=②/①)	예산현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수납액 (가=②-B)	비율
합 계	11,736,841	11,836,595	100.8	10,488,409	10,912,569	104.0	924,026	8.5
이 전 수 입	10,266,192	10,311,151	100.4	9,238,813	9,624,163	104.2	686,988	7.1
자 체 수 입	158,643	213,438	134.5	164,081	202,891	123.7	10,547	5.2
지방교육채	-	-	-	133,440	133,440	100.0	△133,440	-
이월금	1,312,006	1,312,006	100.0	952,075	952,075	100.0	359,930	37.8

[표-4] 세입 자원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결산액)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③	구성비율	증감 ③-①	수납률 ③/①
합 계	11,736,841	11,849,791	11,836,595	100.0	99,754	100.8
중앙정 지방교육 재정보조금	보통교부금 5,633,797	5,633,797	5,633,797	47.6	0	100.0

부 이 전 수 입		특별교부금	227,102	234,793	234,793	2.0	7,691	103.4	
		소 계	5,860,899	5,868,590	5,868,590	49.6	7,691	100.1	
		국 고 보 조 금	26,374	24,871	24,871	0.2	△1,503	94.3	
		특 별 회 계 전 입 금	588,049	585,129	585,129	4.9	△2,920	99.5	
		계	6,475,322	6,478,590	6,478,590	54.7	3,268	100.5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법 정	지 방 교 육 세	1,607,900	1,607,950	1,607,950	13.6	50	100.0	
		담 배 소 비 세	246,916	246,916	246,916	2.1	0	100.0	
		시 도 세	1,503,221	1,503,171	1,503,171	12.7	△50	100.0	
		학 교 용 지 일반회계부담금	6,059	6,059	6,059	0.1	0	100.0	
		지 방 교 육 재 정 교부금보전금	85,120	91,734	91,734	0.8	6,614	107.8	
		교육급여보조금	11,674	10,673	10,673	0.1	△1,001	91.4	
		소계	3,460,890	3,466,503	3,466,503	29.3	5,613	100.2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207,642	218,506	218,506	1.9	10,864	105.2	
		기초자치단체	103,832	111,746	111,746	0.9	7,914	107.6	
		소계	311,474	330,252	330,252	2.8	18,778	106.0	
		계	3,772,364	3,796,755	3,796,755	32.1	24,391	100.7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8,506	35,806	35,806	0.3	17,300	193.5
	자 체 수 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 본 적 교육수입	99,494	100,316	99,867	0.8	373	100.4
선 택 적 교육수입			2,400	1,937	1,937	0.02	△463	80.7	
행 정 활 동 수 입		5,126	5,350	5,340	0.1	214	104.2		
자 산 수 입		자 산 임 대	431	525	484	0.0	53	112.3	
		자 산 대 외 대	7,558	10,607	10,601	0.1	3,043	140.3	
이 자 수 입		7,008	14,975	14,975	0.1	7,967	213.7		
적 립 금 수 입		0	-	-	-	-	-		
금 용 자 산 회 수		융 자 원 금	16,302	16,302	16,302	0.1	0	100.0	
		보 증 금	0	300	300	0.0	300	-	
기 타 수 입		제 재 금	787	1,599	953	0.01	166	121.1	



	기 타	18,976	62,230	62,161	0.5	43,185	327.6
	과 년 도	561	12,493	518	0.0	△43	92.3
	계	158,643	226,634	213,438	1.8	54,795	134.5
지 방 교 육 채		0	-	-	-	-	-
기 타 (전년도이월금)		1,312,006	1,312,006	1,312,006	11.1	0	100.0

## 2) 불납결손액

- 2019회계연도의 불납결손액은 2억 3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률은 0.2%이고, 전년도 불납결손액 5억 7천 1백만원보다 3억 4천 1백만원(59.7%)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률은 0.3% 감소됨.
- 이는 전년도와 달리 ‘연체료’에 대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년도 수업료’와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보다 각각 3천 9백만원, 2억 5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과년도 수입’의 불납결손률은 해당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0.9%로 전년도 ‘과년도 수입’ 불납결손률 2.7%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이 중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전년대비 73.4%(2억 6천 8백만원) 감소한 것이 주된 사유임.
- 다만 불납결손액이 전년대비 59.7%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전체불납결손액의 89.4%(2억 5천 2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시효완성에 따른 상습적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고지 및 독촉 이외에도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5] 소관별·사유별 불납결손액

(단위 : 백만원, %)

과목			2019			2018			증 감 (B-D)
			징수결정액 (A)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C)	불납결손액		
				금액(B)	비율 (B/A)		금액(D)	비율 (D/C)	
자체수입 합계			112,758	230	0.2	124,733	571	0.5	△341
교수-학생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수업료	99,797	5	0.0	109,791	3	0.0	2
		지난년도 수업료	468	110	23.5	910	149	16.4	△39
기타수입	제재금 수입	연체료	-	0	-	253	45	17.8	△45
	과년도수입		12,493	115	0.9	13,779	374	2.7	△259

(단위 : 천원, %)

과목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비고 (결손내역)
	금액	비율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합 계	229,690	100.0	5,492	205,281	18,917	
수업료	4,517	2.0			4,517	자퇴·제적
지난년도 수업료	109,730	47.8	846	107,921	963	
과년도수입	115,443	50.2	4,646	97,360	13,437	

### 3)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7%인 129억 6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137억 6천만원(7.25%)보다 7억 9천 3백만원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미수납액의 감소는 ‘지난년도 수업료’를 포함한 ‘수업료’의 미수납액(3억 3천 5백만원)이 전년도 ‘수업료’ 미수납액(6억 2천만원)보다 46.0%(2억 8천 5백만원) 감소하였고, ‘과년도 수입’에 대

한 미수납액(118억 6천만원)이 전년 대비 6.9%(8억 8천 2백만원) 감소했기 때문임.

○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살펴보면, ‘납부자 태만’이 42억 6천 7백만원(32.9%), ‘채무자 재력부족’이 42억원(32.4%), ‘재산압류중’이 36억 9천 5백만원(28.5%), ‘채무자 거소불명’이 2억 5백만원(1.6%), ‘채무자 징수유예’가 7천만원(0.5%), ‘기타’ 5억 3천만(4.1%) 등임.

- 이 중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38억 2천 6백만원(47.7%) 감소하였으나, ‘납부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452.7%(34억 9천 5백만원) 급증한 42억 6천 7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납부자 태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통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채무자 실제 재력 및 거소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6]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결수액(A)	수납액(B)	불납손액(C)	미수납액(D=A-B-C)			미수납 내역	
				금액	미수납율	구성비율		
계	193,048	179,852	229	12,967	6.7	100.0		
교수·학습 활동수입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100,265	99,816	114	335	0.3	2.6	○ 수업료 : 177 -유치원 : 1 -고등학교 : 176 ○ 지난년도 수업료 : 158 -고등학교 : 158
행정활동 수입	사용료수입	4,850	4,840	0	10	0.2	0.1	○ 토지사용료 : 10

	수수료 수입	500	500	0	0	0.0	0.0		
자산수입	임대료수입	525	484	0	41	7.8	0.3	○ 대부료 : 41	
	토 지 매 각	10,524	10,518	0	6	0.1	0.0	○ 공유재산 매각대금 : 6	
	기타유형 자산매각	65	65		0	0.0	0.0		
기타수입	제재금수입	변 상 금	745	249	0	496	66.6	3.8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496
		위 약 금	309	282	0	27	8.7	0.2	○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증가산금 : 1 ○ 보증금,지연배상금 등 : 26
		연 체 료	182	124	0	58	31.9	0.4	○ 변상금연체료 : 55 ○ 과태료연체료 : 3
		과 태 료	303	243	0	60	19.8	0.5	○ 학원과태료 : 57 ○ 특별교육미이수과태료 : 2
	제재금수입	59	54	0	5	8.5	0.0	○ 징계부가금 : 5	
	기타수입	62,228	62,159	0	69	0.1	0.5	○ 소송비용액 : 67 ○ 대부료 및 변상금분납이자 등 : 2	
	과년도수입	12,493	518	115	11,860	94.9	91.5	○ 토지매각대금 : 9 ○ 대지료 : 160 ○ 변상금 : 6,262 ○ 위약금 : 2,254 ○ 변상금분납이자 : 119 ○ 부당이득금 : 2,124 ○ 과태료 : 453 ○ 소송비용액 등 : 479	

[표-7]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미수납액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만		재압류종		기 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	12,966	70	0.5	205	1.6	4,200	32.4	4,267	32.9	3,695	28.5	530	4.1
2018	13,760	140	1.0	237	1.7	8,026	58.3	772	5.6	4,201	30.5	384	2.8
증감	△793	△70	△50.0	△30	△13.5	△3,826	△47.7	3,495	452.7	△506	△12.0	146	38.0

### 다.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11조 1,946억 9천 6백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5,421억 4천 5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조 7,368억 4천 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조 9,680억 1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4%가 집행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9조 6,005억 6천 4백만원) 집행률(91.5%)보다 1.9% 증가된 것임.

[표-8]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②	비율 (②/①)	금액③	비율 (③/①)	금액④	비율 (④/①)
2019	11,736,841	10,968,011	93.4	487,441	4.2	281,389	2.4
2018	10,488,409	9,600,564	91.5	542,145	5.2	345,700	3.3
증감	1,248,432	1,367,447	14.2	△54,704	△10.1	△64,311	△18.6

- 정책사업별 결산액을 살펴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이 전체의 89.3%를 차지하는 9조 7,907억 9천 8백만원으로, 이 중 인적자원운용 4조 6,640억 6백만원(42.52%),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9,973억 7백만원(18.21%), 교육복지지원 1조 5,704억 6천 2백만원(14.32%)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표-9]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액 구성률	전년도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미집행률 ④/①
	정책사업							
	합 계	11,736,841	10,968,011	100.0	9,600,564	487,441	281,389	2.40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액	전년도	다음연도	집행잔액	미집행률
	정책사업	①	②	구성률	결산액	이월액③	④=①-②-③	④/①
	유아및초중등교육	10,527,642	9,790,798	89.23	8,959,930	477,242	259,602	2.47
	인적자원운용	4,725,491	4,664,006	42.52	4,401,687	169	61,316	1.30
	교수·학습활동지원	553,145	527,076	4.81	462,966	9,379	16,690	3.02
	교육복지지원	1,609,477	1,570,462	14.32	1,470,173	22	38,993	2.42
	보건/급식/체육활동	207,824	140,594	1.28	98,712	55,292	11,938	5.74
	학교재정지원관리	2,007,572	1,997,307	18.21	1,895,859	0	10,265	0.5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b>1,424,133</b>	<b>891,353</b>	<b>8.13</b>	<b>630,533</b>	<b>412,380</b>	<b>120,400</b>	<b>8.45</b>
	평생·직업교육	31,000	28,872	0.27	25,706	287	1,841	5.94
	평생교육	30,258	28,133	0.26	25,038	287	1,838	6.07
	직업교육	742	739	0.01	668	0	3	0.40
	교육일반	1,178,199	1,148,341	10.46	614,928	9,912	19,946	1.69
	교육행정일반	<b>127,654</b>	<b>117,360</b>	<b>1.07</b>	<b>137,717</b>	<b>3,273</b>	<b>7,021</b>	<b>5.50</b>
	기관운영관리	60,544	51,797	0.47	50,761	6,639	2,108	3.48
	지방채상환및리스크	980,978	979,184	8.92	426,450	0	1,794	0.18
	예비비 및 기타	9,023	0	0.00	0	0	9,023	100.0

-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의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볼 경우 ‘교육행정일반’ 사업이 전년 대비 14.8%(203억 5천 7백만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비용(226억 9백만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한편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42.4%(418억 8천 2백만) 증가된 1,405억 9천 4백만원으로, 이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비용이 332억 2천 7백만원(45.9%) 증가하였고, 보건 및 급식 관리를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비용이 전년 대비 59.1%(60억 9천 2백만원) 증가했기 때문임.

○ 또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전년도 대비 41.4%(2,608억 2천만원) 증가된 8,913억 5천 3백만원으로,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중 ‘학교신증설’이 전년도 대비 49.7%(759억 7천 9백만원), ‘학교시설증개축’이 전년도 대비 49.0%(335억 3백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37.0%(1,513억 3천 8백만원) 증가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의 26.6%(552억 6천 1백만원)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29.0%(4,123억 8천만원)는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공사기간이 필요한 시설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실제공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인 이월행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월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세출 결산액의 60.7%를 차지하고 있는 인적자원운용 및 학교 재정지원관리 등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65.6%)에 비해 그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매년 지출액이 증가(전년도 대비 3,637억 6천 7백만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실적이 저조한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나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표-10]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18		증 감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금액	비율
세출 결산액	10,968,011	100.0	9,600,564	100.0	1,367,447	14.24
인적자원운용	4,664,006	42.52	4,401,687	45.85	262,319	5.96

교수-학습활동지원	527,076	4.81	462,966	4.82	64,110	13.85
교육복지지원	1,570,462	14.32	1,470,173	15.31	100,289	6.82
보건/급식/체육활동	140,594	1.28	98,712	1.03	41,882	42.43
학교재정지원관리	1,997,307	18.21	1,895,859	19.75	101,448	5.3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91,353	8.13	630,533	6.57	260,820	41.3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0,663	5.11	409,325	64.92	151,338	36.97
학교신증설	228,872	2.09	152,893	24.25	75,979	49.69
학교시설증개축	101,818	0.93	68,315	10.83	33,503	49.04
평생교육	28,133	0.26	25,038	0.26	3,095	12.36
직업교육	739	0.01	668	0.01	71	10.63
교육행정일반	117,360	1.07	137,717	1.43	△20,357	△14.78
기관운영관리	51,797	0.47	50,761	0.53	1,036	2.04
지방채상환및리스크	979,184	8.93	426,450	4.44	552,734	129.61
예비비 및 기타	0	-	0	-	-	-

○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은 인건비가 3조 7,818억 6천 2백만원, 물건비 4,227억 4천 3백만원, 이전지출 1조 1,176억 3천 6백만원, 자산취득 7,619억 9천 2백만원, 상환지출 9,531억 8천 9백만원, 전출금등 3조 8,871억 6천 2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434억 2천 7백만원임.

**[표-11]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구성비(%)	
		2019	2018	증감	2019	2018
인 건 비	3,806,294	3,781,862	3,610,705	171,157	34.48	37.61
물 건 비	455,593	422,743	420,643	2,100	3.85	4.38



이전지출	1,150,183	1,117,636	1,112,047	5,589	10.19	11.58
자산취득	1,323,189	761,992	593,345	168,647	6.95	6.18
상환지출	954,344	953,189	400,475	552,714	8.69	4.17
전출금 등	3,981,194	3,887,162	3,449,954	437,208	35.44	35.93
예비비 및 기타	66,043	43,427	13,395	30,032	0.40	0.14
합 계	11,736,841	10,968,011	9,600,564	1,367,447	100.0	100.0

### 1) 불용액(집행잔액)

○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11조 7,368억 4천 1백만원의 2.4%인 2,813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3,457억 1백만원(3.3%)보다 643억 1천 3백만원(18.6%) 감소하였음.

- 2018년도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이 518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257억 2천 1백만원 보다 260억 9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은 101억 9천 만원으로 전년도 42억 4천 9백만원 보다 59억 4천 1백만원 증가 하였음. 한편 '예산집행잔액'은 2,188억 7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3,154억 2천 3백만원) 보다 965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표-12] 최근 3년간 불용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9	2018	2017
예산현액	11,736,841	10,488,409	9,921,584
집행잔액	281,389	345,701	485,652
집행잔액율	2.4	3.3	4.9

[표-13] 세출 성질별 불용률 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잔액률)	전년도 (잔액률)	증감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합 계	11,736,841	281,388 (2.4)	345,701 (3.3)	△64,313	51,820 (18.4)	505 (0.2)	10,190 (3.6)	218,873 (77.8)
인건비	3,806,294	24,433 (0.6)	93,793 (2.5)	△69,360	77	10	65	24,281
물건비	455,594	23,772 (5.2)	36,354 (7.7)	△12,582	1,576	491	526	21,179
이전지출	1,150,183	32,117 (2.8)	47,589 (4.1)	△15,472	382	4	199	31,532
자산취득	1,323,189	113,331 (8.6)	61,572 (5.5)	51,759	44,634	0	20	68,677
상환지출	954,344	1,155 (0.1)	4,304 (1.1)	△3,149	0	0	52	1,103
전출금등	3,981,194	63,965 (1.6)	97,405 (2.7)	△33,440	5,151	0	305	58,509
예비비및기타	66,043	22,615 (34.2)	4,687 (25.9)	17,930	0	0	9,023	13,592

- 이 중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년대비 139.8%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난년도의 경우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및 대성고 학생 보일러 가스 누출사고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이와 같은 예비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한편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전년대비 101.5%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학교신증설과 같은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및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및 취소가 전년대비 296억 1천 2백만원 증가(156.9%)한 것에 따른 것임.
- 한편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77.8%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 91.2%(3,154억 2천 3백만원)보다 13.4%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용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추계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2) 이월액

- 2019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4.15%에 해당하는 4,874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5,421억 4천 5백만) 547억 4백만원(10.1%)이 감소하였음.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sup>2)</sup>.

[표-14]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11,736,841	487,441	308	185,535	1,074	301,906	4.15
2018	10,488,409	542,145	308	183,598	891	358,547	5.17
증감	1,248,432	△54,704	0	1,937	183	△56,641	

2)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157)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가) 명시이월

○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sup>3)</sup>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1,855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1.1%(19억 3천 7백만원) 증가한 것임.

[표-15]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건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	비율 (B/A)	금액	증감률
2019	11,736,841	308	185,535	1.6	1,937	1.1
2018	10,488,409	308	183,598	1.8	48,283	35.7
2017	9,921,584	223	135,315	1.4	27,878	26.0

○ 명시이월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38.6%(전년도 45.2%), 학교신증설 25.2%(13.5%), 학교시설증개축 18.2%(19.1%), 학교급식환경개선 13.2%(10.6%) 등 시설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5.2%(8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액 중 시설사업비의 구성비율이 전년도보다 7.8% 증가하였음.

3)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16]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합계	213,819	19,858	185,534	100.00	86.77
<b>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b>	<b>73,929</b>	<b>499</b>	<b>71,550</b>	<b>38.56</b>	<b>96.78</b>
<b>학교신증설</b>	<b>64,148</b>	<b>14,862</b>	<b>46,770</b>	<b>25.21</b>	<b>72.91</b>
<b>학교시설증개축</b>	<b>34,546</b>	<b>97</b>	<b>33,805</b>	<b>18.22</b>	<b>97.86</b>
<b>학교급식환경개선</b>	<b>27,604</b>	<b>958</b>	<b>24,417</b>	<b>13.16</b>	<b>88.45</b>
사립유치원지원	6,492	2,342	3,713	2.00	57.19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860	-	1,860	1.00	100.00
학생상담활동지원	720	-	720	0.39	100.00
대안교육운영지원	856	-	606	0.33	70.79
공유재산및물품관리	550	-	550	0.30	100.00
학생생활지도지원	1,630	650	529	0.29	32.45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49	-	449	0.24	100.00
외국어교육활동지원	182	-	182	0.10	100.00
교육과정운영	526	405	121	0.07	23.00
직속기관운영	110	-	110	0.06	100.00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100	5	95	0.05	95.00
학력평가관리	82	33	29	0.02	35.37
대학수학능력시험	14	-	14	0.01	100.00
유아교육지원	20	7	13	0.01	65.00
시설사업관리	1	-	1	0.00	100.00

○ 명시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이 153건, 1,248억 4천 7백만원(6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 부족 및 절차 진행 등에 따른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유가 88건, 348억 7천 6백만원(18.8%), 기타 사유가 67건, 87억 4천 2백만원(13.9%) 등임.

- 이 중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명시이월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16% 감소(280억 6천 3백만원)하였으나

사업추진시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은 16건, 57억 2천 8백만원에 이르는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의 확보 등 예산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은 이월은 예산의 변경을 통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이월의 남용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월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특히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의 경우 전체 153건 중 56건(36.6%)이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17] 명시이월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총 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사업추진 장애발생	토지매입지연	기타
2019	건 수	308	153	88	-	67
	이월액 (비율)	185,534 (100.0)	124,847 (67.3)	34,876 (18.8)	-	8,742 (13.9)
2018	건 수	308	177	58	-	73
	이월액 (비율)	183,598 (100.0)	152,910 (83.3)	21,946 (12.0)	-	8,742 (4.7)
2017	건 수	223	173	40	1	9
	이월액 (비율)	135,314 (100.0)	73,539 (54.4)	57,672 (42.6)	1,793 (1.3)	2,310 (1.7)

○ 한편 2018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2019회계연도에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총 4개 사업(37건), 156억 1천만원으로,

이와 같이 명시이월 후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는 사업 추진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표-18] 명시이월 후 전액 불용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사업수	2018년 명시이월액	2019년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시설사업관리	4	14	-	100.0	- 추진계획 변경
학교시설증개축	16	12489	-	100.0	- 연도내 공사집행 불가 및 사업취소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	1713	-	100.0	- 학교장의 석면철거공사 연기 - LED렌탈사업 추진계획 변경 -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학교급식환경개선	2	1394	-	100.0	- 협의기간 소요로 집행 불가 - 사업규모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 미비
합계	37	15,610	-	100.0	

나)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4)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

4)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시기 조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임.

-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전년대비 566억 4천 1백만원 감소(15.8%)한 3,019억 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6%임.

**[표-19]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A)	건수	사고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	비율(B/A)	금액	증감률
<b>2019</b>	<b>11,736,841</b>	<b>1,074</b>	<b>301,906</b>	<b>2.57</b>	<b>△56,641</b>	<b>△15.80</b>
2018	10,488,409	891	358,547	3.42	56,975	18.89
2017	9,921,584	1,279	301,572	3.04	83,762	38.46

-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등 35개의 사업 1,074건이 사고이월 되었음.

**[표-20] 사고이월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합계	560,709	466,427	164,470	301,906	100.0	53.8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64,178	225,467	63,105	162,307	53.76	61.44
학교신증설	156,229	120,342	63,550	56,797	18.81	36.35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학교시설증개축	66,765	57,533	16,382	41,151	13.63	61.64
학교급식환경개선	51,165	43,052	12,208	30,844	10.22	60.28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436	2,393	16	2,378	0.79	97.64
직속기관시설관리	2,854	2,697	407	2,291	0.76	80.25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7,766	6,966	4,999	1,967	0.65	25.33
학생상담활동지원	1,234	1,232	247	985	0.33	79.81
학생생활지도지원	3,244	2,641	1,675	965	0.32	29.76
문화예술교육활성화	783	759	294	465	0.15	59.39
교육연구운영지원	667	636	386	250	0.08	37.51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260	200	0	200	0.07	76.74
평생학습운영지원	200	160	-	160	0.05	80.00
교원인사관리	187	147	-	147	0.05	78.52
교육행정기록물관리	200	110	-	110	0.04	55.00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230	98	-	98	0.03	42.46
공유재산및물품관리	550	550	458	92	0.03	16.67
도서관운영지원	262	98	9	89	0.03	34.09
교육정책기획관리	115	99	10	89	0.03	77.09
정보보안관리	100	84	0	84	0.03	83.77
시설사업관리	151	142	73	68	0.02	45.34
특색교육과정운영	126	119	66	53	0.02	41.75
대안교육운영지원	88	49	0	49	0.02	55.52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40	38	1	37	0.01	93.57
학교환경위생관리	52	52	20	32	0.01	61.35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120	99	69	30	0.01	25.31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68	58	34	23	0.01	34.00
근로자인사관리	90	84	62	22	0.01	24.44
학교폭력예방지원	122	122	100	22	0.01	17.99
교육복지우선지원	235	218	197	22	0.01	9.15
교육과정운영	21	21	-	21	0.01	100.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0	18	-	18	0.01	92.41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100	87	70	17	0.01	17.38
교실수업개선지원	15	26	13	13	0.00	85.40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36	30	19	11	0.00	30.56

- 사고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중 공사추진이 496건, 1,151억 4천 5백만원(38.1%), 계약기간 미도래가 272건, 985억 9천 5백만원(32.7%), 추경 등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 174건, 467억 1천 4백만원(15.5%),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이 46건, 272억 6천 1백만원(9.0%), 사전절차 지연이 38건, 74억 1천 4백만원(2.5%) 등임.
-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이월의 발생사유는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 사업예산의 추계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이는 사고이월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무리한 사업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한 관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해당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예산을 감액조정한 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21] 사고이월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총 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방학중 공사추진	기타
2019	건 수	1,074	272	174	38	46	496	48
	이월액 (비 율)	301,906 (100.0)	98,595 (32.66)	46,714 (15.47)	7,414 (2.46)	27,261 (9.03)	115,145 (38.14)	6,777 (2.24)
2018	건 수	891	263	47	49	73	453	6
	이월액 (비 율)	358,547 (100.0)	173,003 (48.25)	10,230 (2.85)	17,503 (4.88)	51,390 (14.33)	105,671 (29.47)	750 (0.21)
증감	건 수	183	360	347	54	59	436	23
	이월액 (비 율)	△56,641 (△15.80)	△74,408 (△43.01)	36,484 (356.64)	△10,089 (△57.64)	△24,129 (△46.95)	9,474 (8.97)	6,027 (803.6)

### 3) 전용·이체

#### 가)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5)에 따라 예산을 행정과목인 각 세항·목 간의 상호변경을 통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에는 계약제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등 총 88건 235억 2백만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는바,

- 이는 예산현액 11조 7,368억 4천 1백만원 대비 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102억 2천 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1%)보다 132억 7천 5백만원(129.8%) 증가한 것임.

**[표-22]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발생건수	예산현액 ①	전 용 액②	전용비율 (②/①)
<b>2019</b>	<b>88</b>	<b>11,736,841</b>	<b>23,502</b>	<b>0.20</b>
2018	71	10,488,409	10,227	0.10
2017	68	9,921,584	48,209	0.49

**[표-23] 성질별 '전용' 규모**

(단위 : 백만원, %)

성질별 예산구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증감 (A-B)
	전용액(A)	구성비	전용액(B)	구성비	
합 계	23,502	100.0	10,227	100.0	13,275
인건비	9,359	39.82	555	30.88	8,804
기관운영비	2	0.01	10	5.43	△8
학교운영비	0	0.00	3,158	63.60	△3,158
교육사업비	14,011	59.62	6,504	0.09	7,507
시설사업비	130	0.55	0	0.00	130

5)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인 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의 전용은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 및 전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각 사업부서에는 예산 전용의 내재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일부 전용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추계 및 예산편성의 오류를 해소하거나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도말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전용이 예산편성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표-24] 분기별 '전용' 규모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b>2019</b>	<b>16</b>	<b>1,411</b>	<b>17</b>	<b>10,333</b>	<b>11</b>	<b>395</b>	<b>34</b>	<b>11,363</b>
2018	11	1,394	26	4,200	12	423	22	4,210
2017	12	959	17	26,725	16	1,172	24	19,353

다)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6)의 규정에 따라 회계

6)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연도 중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기타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18.12.20)과 동 시행규칙의 개정(2019.1.16.)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종전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에서 1실 3국 7담당관 12과로 변경됨.
- 이와 관련한 세부적 조직개편으로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신설(민주시민교육과 및 학생생활교육과 업무 담당) 및 교육공간기획추진단 폐지(학교지원과 및 교육시설안전과로 업무 이관), 교육정보화과 폐지(행정관리담당관 및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업무 이관), 본청 부서 명칭 변경(체육건강과→문화체육건강과)과 이에 따른 창의·예술·교육기부담당 업무(교육혁신과)의 이관, 급식운영담당 이관(체육건강과→학교보건진흥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44건, 1,707억 1천 1백만원의 이체가 발생됨.

[표-25]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발생건수	예산현액	이 체 액	
			증	감
2019	44	11,736,841	170,711	△170,711
2018	9	10,488,409	10,912	△10,912
2017	17	9,921,584	23,670	△23,670

[표-26] 서울시교육청 조직 현황(본청)

조직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5담당관)					교육정책국 (4과)				평생진로교육국 (4과)			교육행정국 (3과)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교육혁신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체로 인한 사업 이관 부서는 당초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관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예산의 이체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8년도에 신설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은 신설 1년만에 폐지되고 현재 소관 업무는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와 교육시설안전과로 이관되었는바,

이와 같은 예산의 이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잦은 조직의 신설과 폐지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4) 채권.채무

##### 가) 채권

- 201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807억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2,983억원 대비 175억 3천 5백만원(5.9%)이 감소하였음.
- 채권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수입을 제외한 토지매각대,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수업료, 기타수입, 대여장학금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약 360억 3천 6백만원(12.1%)이 소멸되었으나, 전세자금, 대지료, 기타사용료, 변상금, 위약금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9억 6천 8백만원(0.3%)이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채권보유액의 감소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여장학금 소요자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163억 2천만원)한 것이 주요 원인임. 그러나 여전히 전세자금, 대지료(토지임대수입), 변상금 등은 발생금에 비해 소멸액이 적어 채권이 증가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채권이 불납 또는 시효완성에 따른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권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표-27] 채권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중 발생액 (B)			당해연도 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298,299	13,759	284,539	1,893	948	945	19,427	1,741	17,685	280,765	12,967	267,799
토지매각대	1,737	18	1,719	98	6	92	981	9	972	854	15	839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156	1	154	2	1	2	113	1	111	45	1	45
전세자금	5,310	0	5,310	850	0	850	300	0	300	5,860	0	5,860
대 지 료	200	200	0	51	51	0	40	40	0	211	211	0

수업료	620	620	0	177	177	0	461	461	0	336	336	0
기타사용료	0	0	0	0	0	0	0	0	0	0	0	0
변상금	6,398	6,398	0	496	496	0	136	136	0	6,758	6,758	0
위약금	2,296	2,296	0	90	90	0	43	43	0	2,343	2,343	0
기타수입	18,726	4,226	14,500	129	128	1	1,051	1,051	0	17,804	3,303	14,501
대여장학금	262,856	0	262,856	0	0	0	16,302	0	16,302	246,554	0	246,554

나) 채무

○ 201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161억 7천 7백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 1조 1,691억 4천 4백만원보다 8,529억 6천 7백만원 (73.0%)이 감소하였음

[표-28]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채무발생액	상환, 소멸액	비교증감(계)	
지방교육채(차입금)	1,169,144	0	852,967	△852,967	316,177

[표-29] 지방채 발행 및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

발행연도	상환재원부담주체	상환조건	이율 (% (고정/변동))	사업명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19년말 잔액 (c=a-b)	'19년 이자 납부액	'19년 조기 상환액
						기 발행액	'19 발행액	계 (a)	기 상환액	'19 상환액	계 (b)			
합 계					1,355,543	1,355,543		1,355,543	186,399	852,967	1,039,366	316,177	22,764	852,967
'14년	교육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2.56 (변동)	'14 학교신설 등	59,514	59,514	0	59,514		59,514	59,514	0	1,371	59,514



			2.99 (변동)	09년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취환	182,629	182,629	0	182,629	76,420	106,209	182,629	0	757	106,209
소 계					242,143	242,143	0	242,143	76,420	165,723	242,143	0	2,128	165,723
15 년	교육 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2.267 (고정)	유치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268,763	0	268,763	0	170,000	170,000	98,763	7,851	170,000
			2.62 (변동)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	137,722	137,722	0	137,722	75,748	61,974	137,722	0	957	61,974
			2.63 (변동)	2015 학교신설	152,410	152,410	0	152,410	34,231	118,179	152,410	0	1,797	118,179
소 계					558,895	558,895		558,895	109,979	350,153	460,732	98,763	10,605	350,153
16 년	교육 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1.58 (고정)	교육환경개선	217,414	217,414	0	217,414	0	0	0	217,414	3,435	0
			2.88 (변동)	교부금차액보전	152,638	152,638	0	152,638	0	152,638	152,638	0	2,308	152,638
			2.88 (변동)	2016 학교신설	51,013	51,013	0	51,013	0	51,013	51,013	0	771	51,013
소 계					421,065	421,065		421,065	0	203,651	203,651	217,414	6,514	203,651
18 년	교육 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3.05 (변동)	교육환경개선	133,440	133,440	0	133,440	0	133,440	133,440	0	3,517	133,440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 「지방자치법」 제124조7), 「지방재정법」 제11조와8)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 7)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8)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따라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재원임.

- 2019회계연도 중 지방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발행된 지방채는 2018회계연도말 기준 1조 1,691억 4천 4백만원이었음. 그러나 2019회계연도에는 2014년도 발행한 학교신설분 595억 1천 4백만원 등 총 8,529억 6천 7백만원을 조기 상환하였는바, 2019회계연도말 기준 지방채는 3,161억 7천 7백만원임.
- 이와 같은 채무의 조기 상환은 교육부가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 및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 시 내시한 지방채 조기 상환액과 서울시의 2018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한 것임.
- 이처럼 결산상 조기에 전입된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회계법」 제19조9)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30] 2019회계연도 예산 지방채 편성 및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추경 예산	지출액	집행률
원 금 상 환	63,683	853,261	852,967	99.9%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9)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이 자 상 환	28,730	22,537	21,914	101.0%
기 ( 중 도 상 환 수 수 료 ) 타	0	0	850*	
<b>합 계</b>	<b>92,413</b>	<b>875,798</b>	<b>875,731</b>	<b>99.9%</b>

### 5) 공유재산 및 물품

-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조 9,633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5,774억 6천 1백만원(1.9%)이 증가하였음.
-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은 30조 7,489억 4천 1백만원(현재액 대비 구성률 99.3%)으로 이 중 공용재산이 전년도말 대비 5,775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그 외 행정재산은 전년도 대비 변함없음. 또한 일반재산은 2,143억 8천 9백만원(현재액 대비 구성률 0.7%)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억 1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공유재산의 증가는 행정재산의 경우 학교신·증설 등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공용재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 건물 및 공작물, 임목중 등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매각 및 철거 등에 따른 재산 변동에 의한 것임.

**[표-31]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용도별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 중 증감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계	증 가	감 소	
합 계	30,385,869	577,461	865,598	288,137	30,963,330
행 정 재 산	30,171,367	577,574	846,846	269,272	30,748,941
공용재산	30,170,397	577,574	846,846	269,272	30,747,971
공공용재산	0	0	0	0	0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재산	970	0	0	0	970
일반재산	214,502	△113	18,752	18,865	214,389

○ 한편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92억 3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대비하여 수량은 5개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2억 5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수량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른 취득과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물품의 단가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및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32] 물품의 증감 및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 현황											당해 연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폐기	기타	소계	
수량	34,209	2,571	106	21	118	2,816	187	106	259	2,171	98	2,821	34,204
금액	86,975	6,852	4,938	60	2,289	14,139	623	4,938	898	5,075	347	11,881	89,233

## 라. 성인지결산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회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sup>10)</sup>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임.
-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개, 교육부지정사업 12개, 자체선정사업 2개 등 총 30개 사업에 1,761억 7천 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11조 7,368억 4천 1백만원 대비 1.5%이며, 성인지 사업 집행률은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1,811억 4천 5백만원 대비 97.3%로 전년도(98.0%)보다 0.7% 감소하였음.

[표-33] 성인지 결산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성과목표 달성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합계				초과 달성	달성 (100%)	미달성
5	25	30	181,145	176,177	97.3	15	61	11

### 1) 사업분류별 검토

- 먼저 성인지 사업을 사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76억 6천 6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10)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3억 6천 1백만원(97.6%)으로 전년도(98.5%)와 비교하여 사업은 2개(인사관리, 인사일반운영) 추가되고 예산현액은 169억 9천 7백만원 증가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91억 1천 1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279억 7천 1백만원(96.1%)으로 전년도(96.7%)와 비교하여 사업은 1개(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축소되고 예산현액은 36억 6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 교육부지정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37억 8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522억 3백만원(97.2%)으로 전년도(97.9%)와 비교하여 사업은 동일하고 예산현액은 2억 2천 5백만원 감소하였음.
- 자체선정사업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6천만원 대비 지출액은 6억 4천 2백만원(97.3%)으로 전년도(94.4%)와 비교하여 사업은 동일하고 예산현액은 3천 3백만원 감소하였음.

**[표-34]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성과목표 달성 사업개수
합 계		30	181,145	176,177	97.3	18
필수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97,666	95,361	97.6	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	29,111	27,971	96.1	2
	교육부지정사업	12	53,708	52,203	97.2	9
선택	자체추진사업	2	659	641	97.3	1

2) 성과목표달성도가 저조한 사업

○ 총 30개의 성과목표 중 18개 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나(전

체 달성율 60%), 오디세이학교운영 등 12개 사업은 달성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영어체험교육지원 등 7개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달성도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표-35] 성인지 성과목표달성도 100%미만 사업목록**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2019			2018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오디세이학교운영	학교 재학생의 균등한 성비율 유지	50	49.3	98.6	50	44.5	89
영어체험교육지원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제고	50	48.7	97.4	50.6	50	98.8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조공학기기 여학생 지원	45.3	43.9	96.9	42.5	43.9	103.3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교육성	여성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54	51.8	95.9	55	55	100
초등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여성스포츠강사 확대	32.2	29.8	92.5	33.6	29	86.3
영재교육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담당교원연수에서 여성교원의 비율 확대	70	63.3	90.4	68	60.5	89
학교안전망구축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여성비율 확대	4.8	4.3	89.6	5	4.6	92
교장 및 기관장 임용	교장,교감 여성 임용 확대	51.9	45.8	88.2	50	50.9	101.8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여학생 참여비율 확대	57.5	50.1	87.1	34.4	53	154.1
마이스터고지원	여학생의 유망분야 진출 유도	34.2	29.2	85.4	31	29.6	95.5
방과후 활동 지원	여학생의 방과후활동 참여 확대 유도	54.2	44.3	81.7	42	53.4	127.1
선진운동부 육성	여학생 선수 훈련비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51	33.9	66.5	34	47.9	140.9

○ 예를 들어 여학생의 산업분야별 마이스터 유망 분야 진출 유도를 목표로 한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도 성과 달성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95.5%) 오히려 당해연도 성과 목표를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달성율이 더욱 저조해지는 상황 (85.4%)을 초래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예산의 목표 달성률을 책정함에 있어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과 실현가능성, 적합성,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무리한 달성 목표의 수립으로 인한 성과 달성율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만 사업별 목표 달성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치상 성과목표치를 하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목표치를 하향할 경우 반드시 성과목표 미달의 근거를 파악하여, 성인지예산의 정책목표와 사업의 성과목표가 적정한 성과지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3) 기타 사업별 예산집행 저조 사업

- 세출예산현액 대비 사업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성과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사업도 4건이 있음.

**[표-36] 집행율 80% 이하 달성도 100%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달성도
초등수석교사제운영	79	59	74.7	101.1
주민참여예산운영	87	70	79.6	116.0
인사관리	1,255	983	78.3	111.2
인사일반운영	772	443	57.3	114.8

- 이와 같이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당초 성과계획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성과계획 수립시 현실가능한 적절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 성과계획에 맞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마.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11)에 따라 결산 승인안과 함께 제출되는 결산서의 구성서류로서, 예산의 성과계획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성과관리 사업은 크게 대상사업과 비대상사업으로 구분되는바, 2019회계연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결산액은 3조 2,923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2조 8,183억 7천 2백만원보다 4,739억 3천 1백만원(16.8%) 증가하였고, 비대상사업의 결산액은 7조 6,757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6조 7,821억 9천 2백만원보다 8,935억 1천 6백만원(13.2%) 증가하였음.

[표-37]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증감액
		결산액	집행률	결산액	집행률	
합 계(A+B)		10,968,011	93.4	9,600,564	91.6	1,367,447
성과관리	전략목표 I	344,889	97.8	303,362	97.4	41,527

- 11)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상사업	전략목표 Ⅱ	1,232,940	87.7	1,126,146	92.9	106,794
	전략목표 Ⅲ	70,754	92.5	64,840	93.2	5,914
	전략목표 Ⅳ	1,473,215	75.4	1,163,300	91.1	309,915
	전략목표 Ⅴ	170,505	93.0	160,724	88.3	9,781
	<b>소계(A)</b>	<b>3,292,303</b>	<b>82.9</b>	<b>2,818,372</b>	<b>92.4</b>	<b>473,931</b>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력운영비	5,789,835	98.9	5,482,085	97.2	307,750
	기본경비	906,689	98.8	873,656	95.5	33,033
	지방채상환	875,731	100.0	321,449	98.7	554,282
	BTL사업비	103,453	98.4	105,002	99.5	△1,549
	예비비 등	0	0.0	0	0.0	0
	<b>소계(B)</b>	<b>7,675,708</b>	<b>98.9</b>	<b>6,782,192</b>	<b>97.0</b>	<b>893,516</b>

○ 2019회계연도 성과관리 목표는 전략목표수 5개, 성과목표수 20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8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대비 초과달성은 15개(17.2%), 달성은 61개(70.1%)로 전체 87.3% (76개)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달성률은 전년도 달성률과 비교하여 초과달성은 5개, 달성은 7개 등 총 12개가 증가하였으며,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율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표-38] 성과관리 총괄

(단위 : 개, %)

회계연도	전략 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등급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130% )	미달성 (100% 미만)
2019	5	25	87	15	61	11
			100.0	17.24	70.11	12.65

2018	5	22	76	10	54	12
			100.0	13.1	71.1	15.8
2017	5	22	71	10	53	8
			100.0	14.1	74.7	11.3

○ 미달성된 성과지표는 11개로 전년도에 비해 1개 감소하였으며, 세부지표로는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에 따른 교육활동 전념시간 증가 정도’(89.4%), ‘메이커스페이스구축률’(93.0%), ‘예술중점교육과정 운영 만족도’(97.0%),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이용률’(86.0%), ‘불법사교육 및 공교육 저해요인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도감독실시건수’(97.5%), ‘초중학교 무상교과용도서 재고율’(92.8%), ‘교육법률지원단 상담횟수’(78.5%), ‘교육대상자 설문 만족도’(99.7%), ‘학부모회 활동 증가 비율’(91.2%), ‘교육참여수당지급률’(43.3%), ‘교원노사관계 직무연수 이수율’(91.5%) 등임.

○ 이 중 가장 낮은 달성률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는 새롭게 성과 지표로 포함된 ‘교육참여수당 지급률’로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은 43.3%에 불과함.

- 이처럼 낮은 성과지표를 나타낸 것은 예산 편성 당시 ‘교육기본수당’으로 설계되었지만, ‘교육참여수당’으로 재설계되는 과정에서 지급요건, 학교급별 차등금액 지급, 사업운영기간단축 등 사업요인의 변경에 따른 것인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의 실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에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연속적인 성과지표의 미달성은 해당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 및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

던 것을 의미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와 함께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39] 미달성 성과지표 내역

(단위 : %)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지표명	측정산식	목표값/실적값/달성률						비고 (세부사업명)
				2019			2018			
				목 표 값	실 적 값	달 성 률	목 표 값	실 적 값	달 성 률	
<b>전략목표 I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b>										
I-1.(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6.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에 따른 교육활동 전념 시간 증가 정도(%)	(교원의 수업 연구 및 생활지도 시간 증가 답변 학교 수/전체 학교수)×100	85	75.97	89.38	95	78.86	83.01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I-2.(교실혁명)										
	3.	메이커스페이스 구축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수/서울시교육청 운영 발명 교육센터 수) ×100	60	55.77	92.95	20	61.9	309.5	과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I-3.(서울 모든 학생의 지성·감성·인성 함양)										
	2.	예술중점교육과정 운영 만족도(점)	응답 점수의 합 /응답 학생 수	4.51	4.37	96.90	4.5	4.51	100.22	창의인성교육운영
<b>전략목표 II :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b>										
II-1.(교육의 공공성 확립)										
	4.	교육행정지원 시스템 이용률 (%)	{{(금년도 월평균 시스템 접속자 수-최근3년간 월평균 시스템 접속자 수)/최근3년간월평균시스템접속자수}×100	7.2	6.19	85.97	14	19.01	135.79	감사관리
	6.	불법사교육 및 공교육 저해요인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도감독 실시건수(건)	11개 교육지원청 2019년도 지도점검 총 건수/26명	675	658.15	97.50		신규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지원
II-2.(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										
	3.	초중학교 무상 교과용도서 재고율 (%) ※ 하향지표	(보관 무상교과용도서/필요 무상교과용도서) ×100	1.8	1.93	92.78	1.8	1.84	97.78	교과지원
<b>전략목표 IV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b>										
IV-1.(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학교)										
	2.	교육법률지원단 상담횟수(건)	본청,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상담건수	7,000	5,493	78.47		신규		학교폭력에 방지원
IV-3.(건강한 먹거리와 식습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장)										
	1.	교육평가 설문만족도 (%)	(만족 이상 응답자 /교육 인원수)×100	94.1	93.79	99.67	93.7	97.44	103.99	학교급식 관리
<b>전략목표 V :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b>										

V-2.(학부모,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1. 학부모회 활동 증가 비율(%)	{{'19년도 학부모회 활동실적 -'16~'18년도 학부모회 활동실적 평균}/18년도 학부모회 활동실적×100	40	36.46	91.15	35	22.6	64.57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V-3.(민·관·학이 함께 더 넓은 학교 만들기)										
	2. 교육참여수당 지급률(%)	(당해년도 친구랑센터 교육참여수당 지급인원/400명)×100	50	21.65	43.30		신규			대안교육운 영지원
V-4.(현장중심 교육행정 조직과 문화 확립)										
	6. 교원노사관계 직무 연수 이수율(%)	(연수 이수 인원 수/연수 계획 인원 수)×100	97	88.78	91.53	93.5	91.52	97.88		교직원 단체관리

## 바. 실·국별 주요검토사항

### 1) 감사관

□ 감사관리(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 등) - 결산서 37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감사관리	618,974	0	36,620	36,620	618,974	604,402	0	14,572
감사사례중심 현장지원연수	15,620	0	0	0	15,620	13,945	0	1,675
감사요원연수 및 교육	33,834	0	0	0	33,834	33,834	0	0
공익제보센터 운영	5,400	0	0	1,184	4,216	4,057	0	159
공익제보포 상금제운영	90,000	0	36,620	0	126,620	126,613	0	7
공직자윤리 위원회운영 및감사자문 위원회운영	9,250	0	0	217	9,033	9,033	0	0
교육행정지원 센터운영	26,270	0	0	0	26,270	26,270	0	0
반부패청렴 정책추진	46,450	0	0	5,046	41,404	41,404	0	0
시민감사관 운영	313,600	0	0	26,574	287,026	279,976	0	7,050
외부기관감사	11,000	0	0	0	11,000	10,000	0	1,000
학교자율종합 감사운영	46,520	0	0	2,099	44,421	39,901	0	4,520
학교지원중심의 감사운영개선	21,030	0	0	1,500	19,530	19,369	0	161

- 2019년도 감사관리 예산은 6억 1천 9백만원으로 전용증감은 3천 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4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동 사업의 전용액 3천 6백만원은 시민감사관운영 경비 등을 전용하여 공익제보포상금으로 지출된 것임(전용승인일 2019.12.23., 예산서 348p).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2019년도에 유치원 감사 확대 실시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횟수가 증가할 것을 예정하여 201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민감사관운영비로 본예산 2억 1천 2백만원보다 1억 2백만원이 증가한 3억 1천 4백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임.

그러나 시민감사관이 실제 감사 참여한 유치원 기관수는 당초 예상한 327기관과 달리 242기관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감사계획 수립 시부터 시민감사관 참여가능성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사 참여 횟수를 다소 무리하게 계획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교육청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한 후 연도 말에 그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보전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예산의 계획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교육청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사업비가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2) 총무과

### □ 지방공무원인건비(명예퇴직수당) - 결산서 38쪽

(단위: 천원)

구 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지방공무원인건비	4,340,000	0	0	0	4,340,000	2,964,424	0	1,375,576
명예퇴직수당	4,340,000	0	0	0	4,340,000	2,964,424	0	1,375,576

- 교육청은 2019년 본예산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43억 4천만원(예상 신청인원 70명 기준)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명예퇴직수당 신청인원이 54명에 불과하여 29억 6천 4만원만 지출되었고 이에 따라 13억 7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상인원 대비 22.9%의 예측오차가 발생하였음.

**[표-40] 2019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내역**

(단위 : 명, 천원)

구분	신청인원	수용인원	수용률	집행액
6월말	29	29	100%	1,509,517
12월말	25	25	100%	1,454,906
계	54	54	100%	2,964,423

- 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평균인원이 53명이었는바, 2019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편성단계에서부터 다소 과한 편성이었다 할 수 있음.<sup>12)</sup>

**[표-41] 2016~2019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수용인원**

(단위 : 명, 백만원)

2016년 집행		2017년 집행		2018년 집행		2019년 집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43	2,231	55	3,072	62	3,383	54	2,964

1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은 「제3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존 70명 기준인원을 60명으로 조정하여 약 6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따라서 교육청이 3년간 사업비 집행인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 한 채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후 이를 불용처리 하였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켰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무원연수지원(지방공무원교육훈련-공로연수운영) - 결산서 38쪽

(단위: 천원)

구 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지방공무원연수 지원	1,024,828	0	0	0	1,024,828	930,582	0	94,24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125,700	0	0	0	125,700	95,479	0	30,211

- 2019년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예산은 1억 2천 5백만원으로, 지출액은 9천 5백만원이고 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동 사업은 2018년도와 달리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18년도 6천 3백만원보다 96% 증가한 규모로 증액편성한 사업이었음.<sup>13)</sup>

이는 6급 정년퇴직예정자에게도 5급 이상자와 동일하게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필요한 퇴직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자율연수비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음.

13)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는 7급 이하까지 확대되었음.

- 그러나 2019년 상·하반기 공로연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 인원의 30%인 52명이 신청하지 않아 대상인원 대비 30%의 예측오차를 보였으며, 동 사업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인 6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60%에 해당하는 65명만이 신청하여 대상인원 대비 39.8%의 예측오차가 발생함..

**[표-42] 공로연수 대상자 및 신청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신청인원 (B)	미신청인원
5급	의무	29	29	0
	희망	31	22	9
	<b>소계</b>	<b>60</b>	<b>51</b>	<b>9</b>
6급	희망	108	65	43
	<b>소계</b>	<b>108</b>	<b>65</b>	<b>43</b>
<b>총계</b>		<b>168</b>	<b>116</b>	<b>52</b>

-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 대상자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라면 동 사업을 확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3) 기획조정실

□ 교육정책기획관리(교육정책개발운영 등) - 결산서 45쪽

(단위: 천원)

구 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교육정책기획관리	910,600	0	0	0	910,600	536,943	81,830	291,827

공약이행관리	123,720	0	0	0	123,720	23,660	81,830	18,230
교육정책개발운영	142,580	0	0	0	142,580	38,829	0	103,751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지원	55,000	0	0	0	55,000	55,000	0	0
교육정책사업정비	52,000	0	0	0	52,000	28,759	0	23,241
교육현장순회간담회	10,600	0	0	0	10,600	10,445	0	155
대내외소통	36,100	0	0	0	36,100	34,827	0	1,273
서울교육방향수립	15,800	0	0	0	15,800	7,772	0	8,028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50,110	0	0	0	50,110	20,717	0	29,39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26,000	0	0	0	126,000	125,928	0	72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1,490	0	0	0	1,490	1,246	0	244
정책자문위원회운영	151,000	0	0	0	151,000	90,566	0	60,434
주요업무계획수립	43,200	0	0	0	43,200	33,593	0	9,607
지방교육자치강화(특별교부금)	53,000	0	0	0	53,000	53,000	0	0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	50,000	0	0	0	50,000	12,601	0	37,399

- 2019년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은 9억 1천만원으로 이 중 5억 3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천 2백만이며 불용액은 2억 9천 2백만원으로 불용율이 28.6%에 달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정책개발운영’, ‘교육정책사업비’, ‘서울교육방향수립’,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정책자문위원회운영’, 그리고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 사업 등의 불용액이 2억 6천 2백만원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전체 불용액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교육정책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불용율이 72.8% 이고,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의 경우도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교육정책개발운영’ 사업은 교육청이 2019년부터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민간전문가(자문관)을 확대 운영할 것을 전제로 2018년도 9천 8백만원보다 45% 증가한 1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한 것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 대부분이 불용처리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은 자칫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검토의견으로 밝힌 바 있음.<sup>14)</sup>

또한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의 경우에도 위 보고서에서 동 사업이 ‘서울교육공론화사업’과 그 취지와 목적, 사업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음.<sup>15)</sup>

- 이처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기획관리의 사업 중 대다수의 사업이 집행이 저조하거나 실질이 전무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교육청이 당초 불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교육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앞서 지적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유념하여 동 사업들과 같이 예산을 과하게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편성한 후 상당부분 불용 처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4)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49~50pp 참고.

15)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61~62pp 참고.

또한 신규 사업의 도입이나 과도한 재정책대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대상, 주요내용,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및 차별성, 추진일정, 집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성이 없는 맹목적 사업확대는 지양하는 등 예산안 편성 절차와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행정일반(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결산서 50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9,000,000	182,961	1,445,463	1,445,463	9,182,961	8,969,452	18,482	195,027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900,000	0	0	780,150	119,850	75,790	18,482	25,578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000,000	19,749	0	665,313	354,436	254,430	0	100,006
학교회계 전출금	7,100,000	163,212	1,445,463	0	8,708,675	8,639,232	0	69,443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되는 경비임.
- 2019년도에는 동 사업비로 90억원이 편성되었고 2018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1억 8천 3백만원으로, 이중 89억 6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천 8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천 5백만원임.

- 한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예비비와 성격이 중복되는 경비로서 예비, 업무추진비,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고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비는 1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침에 따라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2019년도의 경우 예산현액 기준으로 대부분 학교회계전출금의 시설공사에 집중되어 있는바,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예산액 19억원 중 14억 4천 5백만원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약 95%가 시설공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

- 따라서 교육청은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집행하는 경우 예비비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각 세세부사업별 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 경비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행정개선활동지원(제안제도운영)- 결산서 52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행정개선활동지원	35,000	0	0	0	35,000	22,774	0	12,226
제안제도운영	12,800	0	0	0	12,800	2,116	0	10,684

-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서울교육에 대한 창의적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 혁신을 추진

하고, 다양한 제안제도의 운영을 통해 제안 참여문화의 조성·확산을 위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에는 제안제도운영 경비로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2백만원이 지출되고 1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약 77%의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일반시민을 비롯한 공무원 등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청은 동 사업의 문제점과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법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존속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43] 2017~2019년 제안제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예산현액	14,800	14,800	12,800
지출액	2,831	4,574	2,116
불용액	11,969	10,226	10,684
불용비율	80.9	69.1	83.4

4)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 영재교육운영(영재교육활성화 등) - 결산서 357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영재교육운영	501,216	0	18,000	18,000	501,216	494,092	0	7,124
영재교육 내실화지원	107,580	0	0	0	107,580	102,484	0	5,096
영재교육담당 교원전문성신장	35,636	0	0	0	35,636	33,710	0	1,926
<b>영재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b>	<b>358,000</b>	<b>0</b>	<b>18,000</b>	<b>18,000</b>	<b>358,000</b>	<b>357,898</b>	<b>0</b>	<b>102</b>

- 2019회계연도 영재교육운영의 예산액은 5억 1백만원이며, 이 중 전용증감은 1천 8백만원, 지출액은 4억 9천 4백만원으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동 사업에서 전용액(1천 8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사이버영재교육원 위탁 예산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학습공동체 지원 예산으로 전용하였기 때문임(전용승인일자: 2019년 3월 20일).
-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16)에

16)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는 KAIST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9년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사이버영재교육 이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동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영재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출하였음([표-1] 참조).

**[표-44] 전용액 집행 현황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단위: 천원)

연번	설립 구분	학교명	교부금액
1	공립	서울당현초등학교	3,000
2	공립	서울용마초등학교	3,000
3	공립	서울충무초등학교	3,000
4	공립	동대문중학교	3,000
5	공립	종암중학교	3,000
6	사립	배재고등학교	3,000
총 계			18,000

-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전용액은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타 기관 사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예산의 전용을 통해 사업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것임.
-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전용을 통해 남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그동안 사이버영재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비율이 비록 낮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3. 「장애인 등에 따른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예산으로 전액 전용한 것은 예산의 편성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전용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을 변경한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비록 전용에 대한 시의회 승인이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는 전용의 경우에는 시의회 사전 보고 등을 통해 예산의 심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스마트교육지원(스마트스쿨구축 및 운영 등) - 결산서 357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스마트교육지원	15,658,156	0	6,584,000	6,584,000	15,658,156	15,494,908	0	163,247
교육격차해소및 ICT역량함양지 원(특교)	94,000	0	0	0	94,000	94,000	0	0
디지털교과서개 발및활성화 (특교)	2,315,472	0	0	0	2,315,472	2,315,032	0	440
디지털시민 성역량함양	20,500	0	0	0	20,500	16,963	0	3,537
미래형학교 환경조성(특교)	773,776	0	0	0	773,776	653,871	0	119,905
서울미래학교운 영	1,823,750	0	4,000	4,000	1,823,750	1,794,403	0	29,347
<b>스마트스쿨 구축및운영</b>	<b>9,118,084</b>	<b>0</b>	<b>6,580,000</b>	<b>6,580,000</b>	<b>9,118,084</b>	<b>9,117,813</b>	<b>0</b>	<b>270</b>
스마트스쿨 구축및운영 (서울시전입금)	1,410,054	0	0	0	1,410,054	1,410,053	0	0
학생참여형 수업혁신을위한 교사지원 시스템	19,940	0	0	0	19,940	18,088	0	1,852
정보통신윤리교 육지원	82,580	0	0	0	82,580	74,684	0	7,896

- 2019회계연도 스마트교육지원의 예산액은 156억 5천 8백만원이며, 이 중 전용증감은 65억 8천 4백만원, 지출액은 154억 9천 5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6천 3백만원 발생함.
- 이 중 ‘스마트스쿨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대부분의 전용(65억 8천 만)이 발생한 것은 혁신학교의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으로 전용하였기 때문으로(전용승인일자: 2019년 5월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의 일부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전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음<sup>17)</sup>.

- 그러나 ‘스마트스쿨구축 및 운영’ 사업은 IT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 수업혁신을 체계화함으로써 혁신학교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sup>18)</sup>,

단순히 IT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별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IT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수업혁신을 이끄는 것이 목적임.

- 그러나 교육청은 이와 같은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여 학교 업무 경감이라는 이유로 동 사업의 예산을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무선 AP 구축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관련 사업으로 전용하여 지출하였는바(〔표-2〕 참조),

개별 학교가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IT 기술 및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미래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고 사

17)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357쪽.

18)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2-1)’ 689쪽.

업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육과정과 관련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개별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예산의 전용을 남발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혁신학교운영(혁신학교정책 연구), 대학서열화완화지원 (대학체제개편 정책연구) - 결산서 782쪽, 783쪽

(단위: 천원)

구 분 (세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혁신학교운영	12,209,644	0	0	0	12,209,644	11,968,702	32,600	208,343
혁신학교정책 연구	70,000	0	0	0	70,000	33,300	32,600	4,100
대학서열화완화지원	25,200	0	0	0	25,200	10,242	6,828	8,130
대학체제개편 정책연구	18,000	0	0	0	18,000	10,242	6,828	930

- 2019회계연도 혁신학교운영 사업 중 혁신학교 정책연구 예산은 7천 만원이며, 이 중 3천 3백만원이 지출되고 3천 3백만원이 사고이월되어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됨.

혁신학교 정책연구는 혁신자치학교 성장 요인 및 발전과정 탐색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2018년 예산편성 당시부터 교육연구정보원(교육 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음.

- 한편, 2019회계연도 대학서열화완화지원 사업 중 대학체제개편 정책 연구 예산은 1천 8백만원이며, 이 중 1천만이 지출되고 7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대학체제개편 정책연구는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며, 동 사업도 2018년 예산편성 당시부터 교육연구정보원(교육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두 사업의 정책연구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연구용역 유찰로 인한 계약기간 미도래라고 밝히고 있으나<sup>19)</sup>,

교육혁신과가 두 정책연구 과제의 예산을 교육연구정보원에 재배정한 시점은 각각 2019년 7월 10일(혁신학교 정책연구), 2019년 7월 26일(대학체제개편 정책연구)로([표-3] 참조),

1차 공고가 유찰되기는 했지만 예산 사고이월의 주된 원인은 유찰이 라기보다 예산의 재배정 시점이 하반기로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특히, 두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50일로 이미 재배정 시점에서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짐.

**[표-45] 정책연구 재배정시점 및 입찰 기간**

구분	교육혁신과 예산재배정 시점	입찰기간		연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혁신학교 정책연구	2019.7.10	(1차) 2019.8.19.	(1차) 2019.7.4.	150일
		(2차) 2019.9.9.	(2차) 2019.9.30.	
대학체제개편 정책연구	2017.7.26	(1차) 2019.6.19.	(1차) 2019.7.4.	150일
		(2차) 2019.7.9.	(2차) 2019.7.19.	

19)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782~783쪽.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계획되었던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예산의 조기 재배정을 통해 연구 시작일이 회계연도 상반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유아교육과]

### □ 사립유치원지원(공영형사립유치원지원) - 결산서 747쪽

(단위: 천원)

구 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사립유치원지원	54,793,971	0	0	0	54,793,971	48,154,185	3,713,325	2,926,461
공영형사립 유치원지원	<b>6,004,520</b>	<b>0</b>	<b>0</b>	<b>0</b>	<b>6,004,520</b>	<b>2,035,432</b>	<b>3,528,884</b>	<b>440,204</b>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지원	40,248,000	0	0	0	40,248,000	38,216,358	0	2,031,642
사립유치원교 재교구비지원	1,612,407	0	0	0	1,612,407	2,301,262	0	-688,855
사립유치원단기 대체교사지원	288,100	0	0	0	288,100	220,399	0	67,761
사립유치원 에듀파인도입 운영(특교)	492,552	0	0	0	492,552	308,110	184,441	0
사립유치원 운영지원(특교)	228,048	0	0	0	228,048	219,759	0	8,289
사립유치원학급 운영비지원	5,580,000	0	0	0	5,580,000	4,558,845	0	1,021,155
사립유치원회계 운영지원	280,344	0	0	0	280,344	246,603	0	33,741
학교안전교육 내실화운영지 원(특교)	60,000	0	0	0	60,000	47,477	0	12,523

- 2019회계연도 사립유치원지원 사업 중 공영형사립유치원지원 예산은 60억 5백만원이며, 이 중 20억 3천 5백만원이 지출되고 35억 2천 9백만이 명시이월되어 4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사업은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그러나 동 사업은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법인 전환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하는 등 지원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 사업에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예산편성 당시 6개원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60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존에 선정된 4개 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20억 3천 5백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되거나 불용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35억 2천 9백만원을 명시이월한 이유를 2019년 11월에 추가로 선정된 1개 유치원의 예산을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sup>20)</sup> 동 유치원은 12월말에 신청을 취소한 상태이며,  
 2020년에도 현재까지 1개 유치원만 신청한 상황으로<sup>21)</sup>, 2019년에 명시이월된 35억 2천 9백만원은 2020년 현 시점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2020년에는 결국 동 사업에서 막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이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은 선정 조건의 문제 등으로 인해

20)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747쪽.

21) 현재 지원자격 검토중.

현실적으로 사업의 확대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사립유치원의 존립 문제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교육비지원(만3~5세특수교육대상자무상교육비 - 결산서 74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기타교육비지원	347,760	0	0	0	347,760	168,971	0	178,789
만3~5세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347,760	0	0	0	347,760	168,971	0	178,789

- 2019회계연도 기타교육비지원 중 만3~5세 특수교육대상자무상교육비 예산은 3억 4천 8백만원이며, 이 중 1억 6천 9백만원이 지출되고 1억 7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51.4%임.

- 동 사업은 무상교육 차원에서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취원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수업료, 급식비, 통학비, 현장학습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 예산의 편성 당시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공립유치원 70명, 사립유치원 140명 등 총 210명으로 산정하였음.

- 그러나 2019년에 실제로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수는 125명으로, 약 40%의 학생을 과다 추계함에 따라 불용률이 50% 이상에 이르게 된 것임.

-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만3~5세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2018년도 학생수와 동일하게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매년 실질 학생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정 학생수의 과다 추계로 인해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동 사업에 있어서의 학생수 추계 방식은 매년 답습적인 안이한 예산 편성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 사업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46] '만3~5세 특수교육대상자무상교육비' 사업의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17	150,000	142,946	0	7,054	4.7
2018	347,760	317,274	0	30,486	8.8
<b>2019</b>	<b>347,760</b>	<b>168,971</b>	<b>0</b>	<b>178,789</b>	<b>51.4</b>

[초등교육과]

□ 교원인사관리(교원능력개발평가 등) - 결산서 77쪽

(단위: 천원)

구 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교원인사관리	1,066,977	0	0	0	1,066,977	700,516	0	366,461
교원능력개발 평가	<b>789,962</b>	<b>0</b>	<b>0</b>	<b>0</b>	<b>789,962</b>	<b>445,235</b>	<b>0</b>	<b>344,727</b>
교원능력개발 평가지원(특교)	50,000	0	0	0	50,000	50,000	0	0
교원포상업무	18,199	0	0	0	18,199	9,773	0	8,426
교육공무원 평정	53,374	0	0	0	54,374	52,915	0	1,459
국가교육과정 정책이해과정 (특교)	12,750	0	0	0	12,750	11,250	0	1,500
인사관리	191,642	0	0	0	191,642	181,293	0	10,349

- 2019회계연도 교원인사관리 사업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지원 예산은 7억 9천만이며, 이 중 4억 4천 5백만원이 지출되고 3억 4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률이 43.6%에 달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동 사업 내 학습연구년제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학습연구년제 운영 예산 7억 5천 2백만원 중 4억 1천 4백만원이 지출되고 3억 3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44.9%임 ([표-6] 참조).

**[표-47] 2019년 학습연구년제 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학습연구년제 운영	752,400	414,300	0	338,100	44.9%

-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연구년제 운영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18년 141명에서 2019년 500명으로 급격히 증가시켰으나,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달리 동 사업에 지원한 교원수가 275명에 그치면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함.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에 학습연구년제 지원 대상 교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킨 이유를 학습연구년제 운영 방식<sup>22)</sup> 및 연수 내용을 변화시켜 교원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 그러나 실제 2018년과 2019년의 연수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표

22) 선발인원: 총 500명 이내(유아 10명, 초등 290명, 중등 200명)

-7) 참조), 2019년 연수는 2018년 연수에 비해 연수기간 감축, 전문기관위탁연수 대신 자율연수(해외테마 연수 등)가 포함된 것 이외에는 연수 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없으나,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에 비해 지원대상자를 약 350% 이상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을 과하게 확대한 것이라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교원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효과성 검토결과도 없이 인원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표-48] 학습연구년제 연수 내용 비교 (2018년 vs 2019년)

2018년 연수 내용			2019년 연수 내용			
구분	기간	연수 내용	구분	기간		연수 내용
				1학기	2학기	
사전 연수	201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리엔테이션</li> </ul>	사전 연수	2019.2.	20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리엔테이션</li> </ul>
전문기관위탁연수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위탁 전공 영역 연수</li> <li>중간평가회</li> </ul>	자율연수	1개월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과 연계한 개인연구 추진, 해외 테마 연수(자비부담) 등</li> </ul>
현장적용연구	5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원 강좌 수강, 기관탐방, 교육활동 참여, 현장과 연계한 연구 추진 등</li> </ul>	현장적용연구	4개월	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원 강좌 수강, 기관탐방, 교육 활동 참여</li> </ul>
추수 연수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적용연구 보고서 및 일반화</li> <li>최종평가회(최종보고서 발표)개최</li> </ul>	추수 연수	1개월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적용연구 보고서 및 일반화</li> </ul>

유형		A형(1학기)	A형(2학기)	B형	합계 (명)
운영 기간		1학기(6월)	2학기(6월)	1학기(6월)+ 2학기(휴직6월)	
대상 인원	유아	4	4	2	10
	초등	95	95	100	290
	중등	50	50	100	200
합계		149	149	202	500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 수요 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연구년제의 연수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수의 질적 변화를 통해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중등교육과]

□ 교원인사관리(장애교원보조공학기기지원 등) - 결산서 82쪽

(단위: 천원)

구 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교원인사관리	1,588,997	0	0	0	1,588,997	1,200,380	67,098	321,519
교원능력개발 평가	1,200	0	0	0	1,200	1,070	0	130
교원의교육 활동보호(특교)	184,400	0	0	0	184,400	181,749	0	2,651
교원포상업무	5,550	0	0	0	5,550	4,672	0	878
교육공무원 평정	40,865	0	0	0	40,865	29,637	0	271,730
인사관리	1,254,982	0	0	0	1,254,982	983,252	0	271,730
장애교원보조 공학기기지원	102,000	0	0	0	102,000	0	67,098	34,903

- 2019회계연도 교원인사관리 중 장애교원보조공학기기지원 예산은 1억 2백만원이며, 이 중 6천 7백만원이 사고이월되고 3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34.2%임.

- 동 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법」 23)에 근거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장애인 교원에게 수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교원들의 보조공학기기 신청율이 낮아 추가 신청을 받는 등 사업 일정이 연기되면서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수는 총 570명(유치원:15명, 초등:205명, 중등:350명)이며 이 중 동 사업 계획의 주 대상자인 중등 장애 교원의 수는 총 89명(유치원:2명, 초등:30명, 중등:57명)에 불과함([표-8] 참조).
- 이와 같이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수는 전체 교원정원<sup>24)</sup> 대비 1.3%에 불과한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소수로 구성된 장애교원들의 요구사항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전 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장애교원들의 사업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어야 했음.

**[표-49]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립 교원 현황 (2016년~2019년)**

(단위: 명)

연도	유치원			초등			중등		
	중증	경증	계	중증	경증	계	중증	경증	계
2016	0	7	7	22	168	190	49	275	324
2017	0	8	8	22	170	192	51	280	331
2018	1	12	13	23	174	197	54	288	342
2019	2	13	15	30	175	205	57	293	350

2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8.12.30.)

24) 2019년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원은 총 45,190명(유치원:1,234명, 초등:23,928, 중등:20,028명)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급별, 장애유형별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표-9] 참조), 보조공학기기 제품의 단가 산정을 시각장애 교원위주로만 책정하여<sup>25)</sup> 다른 장애유형 교원들의 수요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시각, 청각 장애 이외의 장애교원들의 신청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sup>26)</sup>.

[표-50] 서울시교육청 장애유형별 장애교원 수

(단위: 명)

장애유형	유·초등			중등		
	중증	경증	계	중증	경증	계
지체	9	113	122	11	180	191
뇌병변	6	6	12	2	5	7
시각	4	39	43	33	62	95
청각	3	13	16	5	15	20
언어	-	-	-	-	-	-
지적	-	-	-	-	-	-
정신	1	-	1	-	1	1
자폐성	-	-	-	-	-	-
신장	6	4	10	4	11	15
심장	3	1	4	-	-	-
호흡기	-	-	-	-	-	-
간	-	-	-	-	4	4
안면	-	-	-	-	1	1
장루·요루	-	1	1	-	-	-
뇌전증	-	1	1	-	-	-
국가유공자	-	10	10	2	14	16
계	<b>32</b>	<b>188</b>	<b>220</b>	<b>57</b>	<b>293</b>	<b>350</b>

※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명확한 사업 목표도 없이 2019년에 한시적<sup>27)</sup>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업 환경 개선과 관련

25) 중등교육과 장애교원보조공학기기 산출근거 자료 참조.

26) 지원 대상 총 21명 중, 시각장애교원은 10명(47.6%), 청각장애교원은 9명(42.9%) 지체장애교원은 2명(9.5%)으로 구성됨.

한 장애교원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사업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한 단발성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분석 이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특색교육과정운영(교육과정운영내실화 등) - 결산서 83쪽

(단위: 천원)

구 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특색교육과정운영	7,916,174	110,496	13,000	13,000	8,026,670	7,931,883	0	94,787
고교학점제 운영(특교)	1,296,000	0	0	0	1,296,000	1,279,880	0	16,120
<b>교육과정운영 내실화</b>	<b>29,940</b>	<b>0</b>	<b>0</b>	<b>0</b>	<b>29,940</b>	<b>25,204</b>	<b>0</b>	<b>4,736</b>
대학입학전형 지원(특교)	64,000	0	0	0	64,000	64,000	0	0
사회경제 교육 자료보급	6,260	0	0	0	6,260	3,347	0	2,913
오디세이학교 운영	571,934	0	0	0	571,934	571,934	0	0
일반고교육력 제고지원	117,300	0	0	0	117,300	104,093	0	13,207
일반고교육 역량강화(특교)	5,702,200	48,500	13,000	13,000	5,750,700	5,704,407	0	46,293
자유교양과정 교과목개발	128,540	61,996	0	0	190,536	179,019	0	11,517

- 2019회계연도 특색교육과정운영 중 교육과정운영내실화 예산은 3천만원이며, 이 중 2천 5백만원이 지출되어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7) 동 사업의 예산은 2019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음.

- 동 사업은 교육과정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우수학교를 포창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등교육과가 주관하고 예산의 일부는 초등교육과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재배정되어 운영됨.
- 동 사업의 재배정된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서 및 기관별로 불용액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초등교육과 및 11개 교육지원청은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중등교육과의 경우에는 불용률이 73.6%에 달함([표-9] 참조).

**[표-51] 부서 및 기관별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중등교육과	7,650	2,020	0	5,630	73.6
초등교육과	6,450	6,420	0	30	0.5
11개 교육지원청	15,840	16,764	0	-924	-0.1
전 체	29,940	25,204	0	4,736	15.8

- 특히 중등교육과의 경우, 2017년 불용률 49.6%, 2018년 불용률 100.0%에 이르는 등 3년 연속 동 사업에서의 불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표-10] 참조).

**[표-52]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17	7,650	3,852	0	3,798	49.6
2018	7,650	0	0	7,650	100.0
2019	7,650	2,020	0	5,630	73.6



- 이와 같이, 중등교육과에 동 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중등교육과에서 추진되는 일반고교육력제고지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관련 사업 등에서 교육과정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정 우수 사례 발굴·공유와 관련한 별도의 세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유사중복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중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들의 사업 정책 방향 및 목표뿐만 아니라 사업 세부 내용들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와 같은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5) 평생진로교육국

###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학원건전운영을위한지도단속 등) - 결산서95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12,820,529	14,900	46,000	-46,000	12,835,429	12,084,646	37,429	713,355	5.6
고등과정평생교육시설학습비지원(특별교부금)	15,958	-	-	-	15,958	23,871	-	-7,913	-49.6
공익법인과교육협력사업추진	2,500	-	-	-	2,500	2,227	-	273	10.9
무실적법안정비	-	5,600	-	-	5,600	5,600	-	-	-
법인연수	31,309	6,300	-	-	37,609	28,447	-	9,162	24.4
법인지도감독감사	71,294	3,000	-	-	74,294	56,443	-	17,851	24.0

초·중·고·평생교육기관활성화(특별교부금)	454,100	-	-	-	454,100	454,100	-	-	-
평생교육시설지원	11,604,278	-	-	-	11,604,278	11,273,721	-	330,557	2.8
학원건전운영을위한지도단속	506,340	-	-	-	506,340	105,487	37,429	363,424	71.8
학원장등관계자연수	134,750	-	46,000	-46,000	134,750	134,750	-	-	-

-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예산은 128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천 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8억 3천 5백만원임. 이중 120억 8천 5백만원이 지출되고 7억 1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5.6%임.
- 다만 동 사업 중 “학원건전운영을위한지도단속”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이 71.8%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관련 각종 알림 및 민원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달·처리하여 쌍방간 소통을 강화하고 직무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학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를 편성하였으나,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 교육부에서 “4세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를 개선28)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불용하게 된 것임.

### [표-53] 학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시스템개발용역비	180,000	0	180,000	
시스템소프트웨어구축등	151,500	0	151,500	

#### 28) 학원 전자문서시스템 관련 경과

- ① 2019.2월~3월: 서울시교육청 학원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한 TF 운영 및 기본 개발 계획 수립
- ② 2019.4월~5월: 교육부-교육청 정보화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 (교육부) 자체 통합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의견(예산 및 관리 중복 우려)
  - (교육청)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주요 기능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건의
- ③ 2019.6월: 4세대 나이스 기능 건의 결론 도출(서울시교육청이 건의한 내용을 추가 개발하기로 확정)

업무추진비	1,500	510	990
합 계	333,000	510	332,490

- 이와 함께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9년도 제1차 추경을 통해 2천만원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3천만원 중 1천 3백만원을 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하고 1천 7백만원을 불용하였는바(불용율 56%), 이는 회계질서 문란행위임..

**[표-54] 2017~2019년도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본예산	추경	계			
2017년	10,200	0	10,200	10,174	26	0.2
2018년	10,200	0	10,200	8,252	1,948	19.1
2019년	10,200	20,000	30,200	13,317	16,883	55.9

**[표-55] 2017~2019년도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단위: 천원)

회계연도	본예산액	지급월	구분	지급건수	지급액	불용액
2017	10,200	2월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1	200	26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4	1,493	
			교습시간 위반	1	100	
		4월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1	1,185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	400	
		5월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2	400	
			교습시간 위반	1	100	
		9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1	190	
		10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	1,356	
			교습비 초과징수 등	1	100	

		11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7	4,025	
			교습비 초과징수 등	1	100	
		12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1	525	
소 계				25	10,174	26
2018	10,200	1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	3,100	1,948
			교습시간 위반	1	100	
		2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1	785	
		7월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1	200	
		10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1	240	
		11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	2,702	
		12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1	1,125	
소 계				10	8,252	1,948
2019년	30,200	2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6	8,405	16,883
		3월	교습시간 위반	1	100	
		6월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1	200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5	3,290	
		8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1	747	
		9월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1	200	
		12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1	375	
소 계				16	13,317	16,883

- 이처럼 학원 신고포상금 사업의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한 통계 자료 분석 및 사회적 추이와 동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종전의 예산 편성을 답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이번 결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평생학습운영지원(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등) - 결산서 96쪽

(단위: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평생학습운영지원	7,503,158	-	39,298	-39,298	7,503,158	6,443,467	160,000	899,691	12.0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운영	1,990,720	-	-	-	1,990,720	1,964,275	-	26,445	1.3
문해교육기반 구축(특별교 부금)	567,000	-	-	-	567,000	346,662	160,000	60,338	10.6
장애성인평생 교육	928,820	-	9,148	-9,148	928,820	919,325	-	9,495	1.0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지원	517,200	-	-	-	517,200	516,592	-	608	0.1
퇴직교직원인 생2모작사업	1,699,198	-	-	-	1,699,198	928,415	-	770,783	45.4
평생교육활성화	8,500	-	-	-	8,500,000	8,182	-	318	3.7
평생학습관지 정맞운영	352,620	-	-	-	352,620	352,600	-	20	0.0
평생학습협력 망구축	256,300	-	-	-	256,300	256,187	-	113	0.0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1,182,800	-	30,150	-30,150	1,182,800	1,151,229	-	31,571	2.7

- 2019회계연도 “평생학습운영지원” 예산은 75억 3백만원으로 지출액은 64억 4천 3백만원이며, 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12%임.

- 이 중 퇴직교직원인생2모작 사업의 집행잔액은 7억 7천 1백만원으로 “평생학습운영지원” 전체 불용액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교육인생이모작 활동 자원봉사비를 1인당 1일 4시간 20,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연도 중(2019.3.1.) 이를 13,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임<sup>29)</sup>.

2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시행 2019.3.1.) [평생교육과-4148,

**[표-56] 2018~2019년 교육인생이모작 활동 봉사단 운영 및 수당 지급 현황**

구분	봉사단명	활동인원	활동기관수	봉사비 지급액	봉사활동비 단가 (1일 4시간 기준)
2018년도	기초학력반 외 80개	1,267명	683개	1,122,585,000원	20,000
2019년도	기초학력반 외 81개	1,019명	744개	616,538,000원	13,000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회계연도 중 봉사활동비 단가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의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회계연도 중 사업 또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조치 등 불용액 최소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지원(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등) - 결산서 106쪽

(단위: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용		이체 증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학교폭력예방지원	209,389	8,000	-8,000	6,579,943	6,789,332	5,922,297	21,950	845,085	12.4
보호관찰대상 학생멘토링제 도입(특별교 부금)	21,000	-	-	-	21,000	11,579	-	9,422	44.9

2019.2.28.]

제8조(활동비 지급금액) 활동비는 활동 내용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한다.

① 교육·봉사지원활동은 1일 1회 4시간 이상 시 13,000원을 지급한다.

② 지원 단장은 월 4회 이내에서 추가 교육·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위한 연습시간은 공연 횟수 당 2회, 자료제작을 위한 시간은 월 4회 활동 기준 당 1회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스쿨미투예방및 학교회복지원	33,209	-	-	1,000,000	1,033,209	426,695	21,950	584,564	56.6
찾아가는학교 폭력예방활동 지원사업(특 별교부금)	35,000	-	-	64,000	99,000	99,000	-	-	0.0
청소년경찰학 교운영(특별 교부금)	-	-	-	104,000	104,000	104,000	-	-	0.0
평화로운학교 문화조성	-	-	-	51,750	51,750	53,017	-	-1,267	-2.4
학교CCTV교 체(서울시전 입금)	3,000	8,000	-8,000	1,535,000	1,538,000	1,538,000	-	-	0.0
학교안전망구축	5,000	-	-	296,256	301,256	256,240	-	45,016	14.9
학교안전망구 축(특별교부금)	112,180	-	-	14,700	126,880	126,880	-	-	0.0
학교폭력사안 처리지원(특 별교부금)	-	-	-	125,864	125,864	126,405	-	-541	-0.4
학교폭력실태 조사및종합정 보서비스제공 (특별교부금)	-	-	-	56,000	56,000	56,000	-	-	0.0
학교폭력예방 교육지원체계 구축(특별교 부금)	-	-	-	100,000	100,000	100,000	-	-	0.0
학교폭력예방 대책	-	-	-	2,222,373	2,222,373	2,014,647	-	207,726	9.3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를위 한관리자·책임 교사연수(특 별교부금)	-	-	-	80,000	80,000	79,834	-	166	0.2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운영 학교(특별교 부금)	-	-	-	930,000	930,000	930,000	-	-	0.0

- 2019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지원” 예산은 2억 9백만원이며 이체 증  
가액 65억 8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억 8천 9백만원으로,  
이중 59억 2천 2백만원이 지출되고, 8억 4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  
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12.4%임.

-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학교 안전망구축’,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의 불용액이 8억 3천 7백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스쿨미투예방및 학교회복지원’의 경우 불용율이 56.6%에 달하고 있음.
- ‘스쿨미투예방및회복지원’은 스쿨미투 발생학교에 학생·교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회복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교원간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대상으로 재발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스쿨미투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회복교육 지원 대상학교가 감소하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표-57] 2018~2019년 스쿨미투 발생 현황**

년도	발생학교수	유형별 행위교사 수			
		성희롱 (언어·시각적)	성추행	성폭행	계
2018	45	101	31	1	133
2019	45	32	16	1	49
증감현황	-	△68%	△50%		△63%

-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의 하나인 교육법률지원단 전속변호사 출장비 불용율이 97%에 달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2018회계연도 77.5%, 2019회계연도 97.2% 등 해당사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높은 불용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에도 감액 등의 조치 없이 출장비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표-58]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전속 변호사 출장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율	대상인원
2018	1,200	270	930	77.5	1명(본청 1명)
2019	14,400	410	13,990	97.2	12명(본청 1명, 교육지원청11명)
2020	14,400				12명(본청 1명, 교육지원청11명)

-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종전의 예산 편성을 답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이번 결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대안교육운영지원(학교밖청소년지원 등) - 결산서 106쪽

(단위: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용		이체증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대안교육운영지원	2,645,736	100,000	-100,000	5,061,310	7,707,046	6,489,833	654,584	562,628	7.3
대안교육위탁 기관운영	675,516	-	-	3,801,701	4,477,217	3,801,656	606,000	69,560	1.6
학교밖청소년 지원	289,220	-	-	903,659	1,192,879	736,900	48,584	407,395	34.2
학교밖학업중 단학생교육지 원사업(특별 교부금)	164,000	-	-	-	164,000	160,043	-	3,957	2.4
학업중단예방 및공교육내대 안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1,517,000	-	-	-	1,517,000	1,504,063	-	12,937	0.9
학업중단학생 등학습지원및 학력인정	-	100,000	-100,000	181,960	181,960	114,573	-	67,387	37.0
학업중단학생 등학습지원및 학력인정사업 (특별교부금)	-	-	-	173,990	173,990	172,599	-	1,391	0.8

- 2019회계연도 “대안교육운영지원” 예산은 26억 4천 6백만원이며 이체 증가액 50억 6천 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억 7백만원으로, 이중 64억 9천만원이 지출되고, 5억 6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7.3%임.
- 동 사업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의 불용액은 4억 7백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불용 사유는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집행잔액으로 당초 계획된 지급 대상인원보다 지급 인원이 감소한 결과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교육참여수당은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 중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2019년 ‘친구랑’ 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은 574명이며, 이중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청소년은 204명으로<sup>30)</sup> 이는 등록인원의 35.5% 불과함.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 인원을 당초 2,400명(매월 200명)으로 계획하고 2019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sup>31)</sup> 실제로 지급된 인원은 866명으로<sup>32)</sup> 1,534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상인원 대비 63.9%의 예측오차가 나타남..

**[표-59] 2019년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교육참여수당	480,000	157,400	322,600	67.2

30) 교육참여수당 1회 이상 지급인원: 204명

31) 2019년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편성 내역: 200천원×200명×12월=480,000천원

32) 2019년 교육참여수당을 지급받은 누적 인원: 866명

[표-60] 2019년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인원 및 지급액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 지급인원	초	4	3	5	6	7	9	12	12	13	19	90
	중	4	6	8	11	14	15	18	18	21	21	136
	고	33	39	45	57	67	73	69	75	89	93	640
	계	41	48	58	74	88	97	99	105	123	133	<b>866</b>
지 급 액		7,600	9,000	10,700	13,650	16,200	17,750	17,700	18,900	22,250	23,650	<b>157,400</b>
1회이상 지급인원	초	4	4	6	8	10	12	15	15	16	22	
	중	4	7	9	12	16	20	21	23	26	27	
	고	33	47	57	74	94	105	113	122	141	155	
	계	41	58	72	94	120	137	149	160	183	<b>204</b>	

-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중복예산 지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참여수당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음.
- 이처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참여수당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앞서 지적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유념하여 동 사업과 같이 예산을 과하게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편성한 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 결산서 749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856,000	250,000	606,000	0

- 2019회계연도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의 경우 예산현액 8억 5천 6백만원 중 2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6억 6백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음.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학생이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표-61] 2018~2019년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연도	공립	민간기관	계	비고
2018	2	36	38	기준일: 2018.3.26.
2019	2	37	39	기준일: 2019.7.15.

※ 공립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꿈타래학교(고), 미래학교(중)

- 서울시교육청은 대부분의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도에 공립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2개소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이적지(공진중) 등 유휴부지 활용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설립 부지 결정이 지연되면서 동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음.

- 이처럼 공립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설립 예산의 명시이월은 가장 기초적인 설립 부지에 대한 결정조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인바,

이월은 예산의 변경을 통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만큼 무분별한 이월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진로직업교육과]

####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결산서 112쪽

(단위: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38,885,179	-	-	-	38,885,179	37,756,671	-	1,128,508	2.9
특성화고무상 교육비지원	30,984,718	-	-	-	30,984,718	29,864,143	-	1,120,574	3.6
특성화고장학 금지원(특별 교부금)	7,900,461	-	-	-	7,900,461	7,892,528	-	7,933	0.1

- 2019회계연도 “특성화고장학금지원”은 예산현액 388억 8천 5백만 원 중 377억 5천 7백만원이 지출되고, 11억 2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성화고장학금지원”은 직업교육에 재능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sup>33)</sup>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부 대응 투자(교육청 80%, 교육부 20%)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3) 지원제외 : 법정면제.지원자, 직장의 학비지원 대상자, 기타 외부지원자  
지원금액 : 1인당 입학금 14,100원, 수업료 1,450,800원

2.9%으로 낮으나 예산규모가 큰 사업인만큼 불용액이 11억 2천 9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 감소와 입학 후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 등 학생수 변동에 따른 특성화고장학금 지원금의 집행잔액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019년 예산편성 당시 특성화고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을 27,440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2019년도에 지원된 학생은 26,164명으로 1,274명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

**[표-62] 특성화고장학금 지원대상 학생수**

구 분	본예산 지원대상 학생수(A)	실제 지원 학생수(B)	증감(B-A)
2017년도	29,346	27,915	1,431
2018년도	28,514	26,159	2,355
2019년도	27,440	26,164	1,274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 감소 및 변동 등으로 인한 예산의 과다 불용을 우려하여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의 감액조치를 실시해왔으며,

2019회계연도에는 교육통계상 학생수 기준(2019.3.1. / 41,541명)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 비율 62%를 적용하여 지원대상 학생수를 축소·반영하여 감액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

**[표-63]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16년	42,712,862	42,538,557	174,305	0.4
2017년	43,895,727	43,567,454	328,273	0.7
2018년	40,036,169	38,572,666	1,463,502	3.6
2019년	38,885,179	37,756,671	1,128,508	2.9

- 이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고 진학 집중,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 감소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9년도 예산 편성 당시의 지원대상자수와 실제 지원대상자수 간의 오차가 1,200명 이상(1,274명) 발생하였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추계 시 학생수 감소 등 사회적 추이와 동향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체육건강문화예술과]**

- 학생체육활성화지원(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기본계획조사) - 결산서 750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 기본계획조사	100,000	0	100,000	0

- 2019회계연도 “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기본계획조사”의 경우 예산현액 1억원이 다음연도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음.
- 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 사업은 미래 지향적 체육 복합시설 건립 및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현장 지원 중심의 체육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체육교육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8년도에 강북권 학생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건립 기본조사 계획 용역비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건립부지 사용에 대한 서울시-자치구의 협의, 재원분담 협의, 사업 대상 부지 및 시설을 재검토(2018.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등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조차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교육청은 강북권 학생체육관건립 추진에 있어 건립부지, 재원분담, 2018년 타당성 조사 결과의 재검토 등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에 건립 기본조사 계획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한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충분히 이행·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앞서 서울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재원 분담 등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교육활성화(문화예술지원) - 결산서 788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문화예술지원	994,204	696,348	265,345	32,512

- 2019회계연도 “문화예술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9억 9천 4백만원 중 6억 9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6천 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문화예술지원”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연수, 서울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악기은행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이 중 악기은행 구축을 위한 악기대여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에서 대여할 악기를 선정하고 입찰방식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대여한 악기를 희망학교에 대여하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악기 대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2건) 계약 기간을 각각 2019년 11월부터 1년간, 2019년 12월부터 1년간 계약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의 사고이월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하였음.

[표-64] 2019년도 악기 렌탈 계약 내역

구분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단위:원)	계약내용
2018년 (1차)	2018. 5. 10.	2018.8.20. ~ 2019.11.20.	336,840,000	가야금 352조 외
2018년 (2차)	2018. 7. 11.	2018.9.20. ~ 2019.11.20.	82,419,380	팀파니세트 18조
2019년 (3차)	2019. 8. 13.	2019.11.01. ~ 2020.10.31.	276,554,330	가야금 352조 외
2019년 (4차)	2019. 12. 13.	2019.12.13. ~ 2020.12.12.	11,040,000	드럼세트 2조 외

-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기 변경, 계약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사업 추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6) 교육행정국

### [학교지원과]

□ 후기고 배정 - 결산서 123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률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후기고배정)	325,709	7,003	332,712	278,401	11,000	43,311	13.0

- 2019회계연도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사업은 예산액 3억 2천 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3천 3백만원 중 2억 7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 중 이월된 1천 1백만원을 제외한 4천 3백만원(13%)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이와 같은 집행잔액은 후기고에 대한 진학설명회 안내 책자의 낙찰차액 등 운영비 집행잔액 1천 7백만원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천 8백만원 및 기타 일반수용비에 대한 집행잔액 9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해당 사업은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속적인 불용의 발생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종전의 예산 편성을 반복적으로 답습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더욱이 해당 사업예산의 이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고입배정업무가 특정시기(11월~2월)에 집중됨에 따라 고입배정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1년단위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허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동일한 사유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의 이월을 고착화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시 적정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의 고착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65]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불용률
2016	219,444	211,993	-	7,451	3.4
2017	278,401	240,617	6,975	30,809	11.1
2018	344,968	282,152	7,003	55,813	16.2

## [교육재정과]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결산서 127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7,889,940	20,000	2,050	-2,050	17,909,940	17,241,793	550,000	118,148	0.7
공유재산취득	0	10,000	0	0	10,000	10,000	0	0	0.0
교육시설재난공 제회가입	331,600	0	0	0	331,600	327,791	0	3,809	1.1
교육시설직무특 별교육연수	5,330	0	0	0	5,330	4,903	0	427	8.0
기타기금적립	7,526,520	0	0	0	7,526,520	7,526,520	0	0	0.0
물품관리	15,400	0	2,050	-2,050	15,400	15,568	0	-168	-1.1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774,390	10,000	0	0	784,390	182,416	550,000	51,974	6.6
학교개방우수학 교시설개선비지 원 (서울시전입금)	3,010,700	0	0	0	3,010,700	3,010,619	0	81	0.0
학교시설개방우 수학교운영비지 원	6,000,000	0	0	0	6,000,000	5,999,609	0	391	0.0
햇빛발전소 사업활성화	226,000	0	0	0	226,000	164,367	0	61,634	27.3

-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사업은 예산현액 179억 1천만원 중 172억 4천 2백만원이 지출되고 1억 1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은 0.7%임.
- 이 중 ‘햇빛발전소 사업활성화’ 사업의 경우 햇빛발전소 설치 형태에 따라 협동조합형은 교당 4천만원, 한전SPC형은 교당 4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28개교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지원한 학교는 13교에 불과하여, 예산현액 2억 2천 6백만원 중 6천 2백만원(27.3%)의 집행잔액이 발생됨.

[표-66] 2019년도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 인센티브(학교운영비) 지원 현황

지원 연월일	설립 구분	학교명	지원금액(천원)
2019.12.23.	사립중	건대사대부중	40,000
2019.12.23.	공립중	등원중	40,000
2019.12.31.	공립중	덕산중	40,000
2019.12.23.	사립고	대일관광고	4,000
2019.12.23.	공립고	불암고	4,000
2019.12.23.	공립고	당곡고	4,000
2019.12.23.	공립중	봉화중	4,000
2019.12.23.	공립중	원목중	4,000
2019.12.23.	사립중	송실중	4,000
2019.12.23.	사립고	성심여고	4,000
2019.12.31.	공립초	대현초	4,000
2019.12.31.	공립중	방이중	4,000
2019.12.31.	공립고	자양고	4,000
계			160,000

- 해당 사업은 에너지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햇빛발전소의 학교내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운영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햇빛발전소 설치 및 설치 진행 중인 학교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당초 설치를 희망했으나 설치면적의 부족 등으로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임.
- 더욱이 해마다 예산안 제출시 설치 대상학교수를 낮추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용율은 1/4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8년에 74.8%에 달하는 바, 이와 같은 사업비의 과대편성과 지속적인 불용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 지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건전재정을 어렵게 하는 한편, 동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설치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계속해서 종전의 예산 편성을 답습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표-67] 햇빛발전소 설치 신청 후 포기 학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신청 학교수	설치포기 학교수	설치포기사유					
			면적 협소	장소 부적합	학교 취소	사업자 취소	민원	계
2017	52	39	19	9	8	2	1	39
2018	17	8	2	3	3	0	0	8
2019	18	8	0	4	4	0	0	8
합계	<b>87</b>	<b>55</b>	21	16	15	2	1	55

**[표-68] 최근 3년간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불용률**

(단위 :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예산현액	163,300	1,082,331	1,205,823
불용액	48,614	262,529	902,291
불용률(%)	<b>29.8%</b>	<b>24.3%</b>	<b>74.8%</b>

**[교육시설안전과]**

□ 기타교육비지원 - 결산서 126쪽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본예산	추경	합계					
기타교육비지원		17,531,901	17,531,901	17,531,901	14,922,852	0	2,609,049	14.9
고교무상교육	0	5,031,901	5,031,901	5,031,901	2,422,852	0	2,609,049	51.9
고교무상교육 (특별교부금)	0	12,500,000	12,500,000	12,500,000	12,500,000	0	0	0.0

- 2019회계연도 “기타교육비지원” 사업 예산은 자체예산 50억 3천 2백만원과 특별교부금 125억 등 총 175억 3천 2백만원이며, 자체예산 50억 3천 2백만원 중 24억 2천 3백만원이 지출되고, 26억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51.9%임.
- ‘고교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에 대한 고교 무상교육이 조기 시행됨에 따라 고교 3학년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교육비지원’은 공립고, 방통고, 각종 학교의 재학생 24,652명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임.

### [표-69] 고교 무상교육 추경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세부사업)	무상교육지원대상	산출기초내역	편성액
교육재정과 (기타교육비지원)	수업료 <sup>34)</sup> (공립고·방통고·각종학교)	· 고교(인문) : 362,700원, 24,087명 · 방송통신고 : 67,500원, 533명 · 각종학교 : 362,700원, 32명	5,032
학교지원과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사립고)	· 수업료 : 362,700원, 27,374명 · 학교운영지원비 : 98,000원, 33,476명	26,418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수업료 (공·사립 특성화고)	· 공립 : 1,450,800원(½), 485명 · 사립 : 1,450,800원(½), 1,225명	992
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지원비 (공립고·각종학교)	· 공립고 : 107,000원, 23,410명 · 각종학교 : 84,000원, 32명	5,015
중등교육과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지원비 (방통고)	· 33,000원, 88명 · 31,500원, 266명 · 30,000원, 141명	15
합 계			37,472

- 그러나 고교3학년에 대한 수업료 지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수업료가 법정면제 또는 법정지원을 받는 학생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계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고교 3학년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예산 중 51.9%에 이르는 26억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
- 이와 같은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정부에서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도입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인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없이 교육부에서 산정한 학생수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비록 정부시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명확한 집행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시설사업관리 - 결산서 129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시설사업관리	1,300,426	495,034	240,979	2,036,439	1,451,363	68,376	516,700	25.4
건축공간정책	0	0	167,976	167,976	112,694	51,021	4,261	2.5

34)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원)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고
유치원 (공립)	년 액	396,000	5,200	
	분기액	99,000		
	월 액	33,000		
고등학교 (공.사립)	년 액	1,450,800	14,100	
	분기액	362,700		
방송통신 고등학교	년 액	135,000	5,300	
	반기액	67,500		



건축시설관리 일반	1,066,886	0	0	1,066,886	661,500	17,355	388,031	36.4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 검증단운영	92,940	0	0	92,940	77,032	0	15,908	17.1
기획시설사업 추진및지원	0	0	73,003	73,003	30,760	0	42,243	57.9
학교시설안전강화 (특별교부금)	140,600	495,034	0	635,634	569,377	0	66,257	10.4

- 2019회계연도 “시설사업관리” 예산은 13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9천 5백만원과 조직개편(교육공간획추진단)에 따른 이체 2억 4천 1백만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억 3천 6백만원으로, 이 중 14억 5천 1백만원이 지출되고, 6천 8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1천 7백만원(25.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건축시설관리 일반’은 석면제거사업 운영과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6천 7백만원 대비 지출액이 6억 6천 2백만원에 불과하여 불용율이 36.4% 달하고 있음.
- 이는 당초 학교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따른 학교석면모니터단 수당 지급 대상에 학부모가 포함되었으나, 학교내 학부모 참여활동(운영위, 녹색어머니 등)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급 대상에서 학부모가 제외됨에 따라(교육시설안전과-12481,2018.12.26.)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임.

**[표-70] 건축시설관리일반 사업별 불용 현황**

(단위:천원)

사업항목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 금액	다음연도 이월금액	불용액	불용률
건축시설 관리일반	석면제거사업운영	335,300	89,535	17,355	228,410	68.1
	각종위원회운영	110,217	58,524		51,693	46.9

기술직전문성신장 및 청렴제고연수	86,632	43,218		43,414	50.1
외부전문가참여 안전점검	66,880	48,630		18,250	27.3
개축사업운영	251,800	226,494		25,306	10.1
시설관리일반	207,207	188,000		19,207	9.3
교육환경개선우수학교 선정	8,850	7,099		1,751	19.8
합 계	1,066,886	661,500	17,355	388,031	36.4

- 그러나 모니터단 수당지급 대상에서 학부모 제외 방침이 확정된 것은 2018년 12월로, 동 사업예산은 2019회계연도 중 있었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해당 예산의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용처리한 것은 문제라 할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을 통한 감액 조치 등을 활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명시이월 예산의 불용 - 결산서 849~863쪽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건수	전년도 명시이월액	지출액	불용률
합계	37	15,609,703	0	100.0
시설사업관리	4	14,000	0	100.0
학교급식환경개선	2	1,394,036	0	100.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	1,712,531	0	100.0
학교시설증개축	16	12,489,136	0	100.0

- 전년도 명시이월액 중 2019회계연도에 불용률이 100%인 사업은 “시설사업관리”,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56억 1천만원임.
- 먼저 명시이월된 사업 중 전액불용된 “시설사업관리”는 내진공법심의 위원수당 1건과 LED렌탈사업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 3건 등 총 4건 임.

이 중 ‘내진공법심의위원수당’은 교육부 매뉴얼 개정으로 인한 평가기간의 연장으로 내진공법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되어 전액불용되었는바, 이처럼 사업시행 후 얼마되지 않아 이처럼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사정변경이 생겼음에도 추경 등을 통한 예산의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안이한 예산 관리임.

또한 ‘LED렌탈사업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은 2018년 추진계획이 연장됨에 따라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이 명시이월되었으나, 동일한 사업비를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명시 이월된 해당 사업비를 전액 불용한 것인바, 이와 같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중복 예산의 편성은 예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시 예견되는 사업 지연 사유 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학교급식환경개선’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등의 3개 사업은 시설관련 사업들로서 대부분 사업 변경으로 인한 공기 부족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임.
- 그러나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거

나 사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연도 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월된 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업들의 경우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이월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례적으로 남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된 사업비가 다시 공기 부족이나 계획의 변경으로 취소되고 있는바,
-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월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71] 명시이월 후 전액불용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사업명	예산 현액	2018 명시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사 유
시설 사업 관리	내진공법심의위원수당(특별교부금)	11	10	-	10	교육부『내진성능평가및보강매뉴얼』개정으로평가기간이연장되어내진보강설계시기가늦춰짐에따른공법심의위원회미개최
	(중부)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	1	-	1	교육시설안전과 "LED렌탈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한 1년 연장
	(강남서초)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	1	-	1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 1,050천원이 배정되어 규격기술심의수당 750천원(150천원 * 5명)을 본예산에서 지출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	1	-	1	2019년 본예산에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이 편성되어 본예산으로 집행 완료하였음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염광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공사	859	859	-	859	급식실 및 학생식당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행하고자 함
	행당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562	535	-	535	사업규모확대에 따른 행정절차(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변경심의) 이행 후 공사집행, 연도내 공사집행 불가하여 전년도 이월액은 재이월 불가하여 전액 불용
학 교 시 설 교	홍파초 벽체 방음시설 설치	200	194	-	194	2020년 겨울방학 석면공사와 연계사업으로 석면공사 시행 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나,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갈현초 친환경운동장조성	237	228	-	228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체육관 증축사업 완료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체육관

육 환경 개선						증축사업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한천초-본관서관옥내소 화전개선	128	122	-	122	학교장의 석면철거공사 집행 시기 연기 요청에 따른 집행 불가
	한천초-석면부분해체제 거작업(소방개선관련)	90	90	-	90	학교장의 석면철거공사 집행 시기 연기 요청에 따른 집행 불가
	(중부)(공립)2018년LED조 명기구입차비(1,236실,운 영비선공제액)	24	24	-	24	교육시설안전과 "LED렌탈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한 1년 연장
	(중부)(사립)2018년LED조 명기구입차비(695실,운영 비선공제액)	9	9	-	9	교육시설안전과 "LED렌탈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한 1년 연장
	경기상고 강당동 외부창 개선	67	66	-	66	문화재원형고증 연구용역 선행 후 보수방 향 설정 및 추진(문화재청)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능
	한남초 본관(외부창)개선	536	523	-	523	내진보강공사로 인한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강 동 송 파) 공 립 학 교 2018년LED조명기구입차비 (2,563실,운영비선공제액)	49	36	-	36	led임차설치공사 준공일이 2020년3월로 2019년 4/4분기 운영비 불용
	(강 동 송 파) 사 립 학 교 2018년LED조명기구입차비 (513실,운영비선공제액)	6	3	-	3	led임차설치공사 준공일이 2020년3월로 2019년 4/4분기 운영비 불용
	(강 서 양 천) 사 립 학 교 2017년LED조명기구입차비 (2,578실,운영비선공제액)	30	30	-	30	석면텍스학교 제외 및 학교요청(6교 :강신 초,양동초,백석중,목동고,영일고,백석초)으 로 LED렌탈 대상학교 축소
	신남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37	230	-	230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개축사업으로 변경 추진중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 은 100% 불용
	영도초 본관동내부창호 교체	146	146	-	146	석면제거 공사 취소결정(학교의사결정)으 로 내부창개선 공사 병행 취소
	(동작관악)2018년공립 LED조명기구입차비(운영 비선공제액)	29	7	-	7	2020년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으로 전액 불용 후 2020년 본예산으로 재배정 받고 자 함
	(동작관악)2018년사립 LED조명기구입차비(운영 비선공제액)	9	5	-	5	2020년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으로 전액 불용 후 2020년 본예산으로 재배정 받 고자 함
학 교 시 설 증 개 축 학 교 시 설 증 개 축	경희여고 강당겸체육관 설계비	100	100	-	100	강당을 설치해야하는 장소측(대학교)과 설 립 계획 협의중으로 연도내 설계가 불가
	경희중 강당겸체육관 설 계비	100	100	-	100	강당을 설치해야하는 장소측(대학교)과 설 립 계획 협의중으로 연도내 설계가 불가
	갈현초 강당겸체육관	100	100	-	100	배치계획 연구용역 집행 및 지자체 협의 기간 소요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연구용 역 결과 교사재배치 및 지자체 공영주 차장 검토 요청)
	서연중 강당겸체육관	100	100	-	100	배치계획 연구용역 집행 및 지자체 협의 기간 소요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지자 체(서대문구) 공영주차장 검토로 집행 보 류 요청)
	역촌초 강당겸체육관	1,293	1,205	-	1,205	배치계획 연구용역 집행 및 지자체 협의 기간 소요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설계용 역 계약중)

노일중 강당겸체육관 증축	1,193	1,193	-	1,193	체육관 및 급식실 병행 추진 대상으로 실시설계 이후 사업비 40억 초과하여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됨. 행정절차이행에따른사업기간지연
선곡초 강당겸체육관 증축	1,536	1,520	-	1,520	건폐율 초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 추진 후 사업 추진, 급식 컨설팅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월계초 강당겸체육관 증축	962	962	-	962	강당겸체육관 증축 사업 추진 중 유치원 설립계획 반영 요청 계획변경에따른행정절차(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등)이행으로집행불가
창동초 강당겸체육관 증축 설계비	100	100	-	100	학교단위 공간혁신 개축사업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제외
방화초 강당겸체육관 설계 및 시설비	1,313	1,313	-	1,313	서울시교육청 부지정형화사업(인접한 (구) 공향고와 토지재분할) 진행 중으로 토지 재분할 이후 추진
신남초 강당겸체육관 시설비(기부채납)	1,836	1,836	-	1,836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개축사업으로 변경 추진중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은 100% 불용
신남초 특별교실증축(기부채납)	2,748	2,748	-	2,748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개축사업으로 변경 추진중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은 100% 불용
행당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	1,313	1,313	-	1,313	사업규모확대에 따른 행정절차(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변경심의) 이행 후 공사집행, 연도내 공사집행 불가하여 전년도 이월액은 재이월 불가하여 전액 불용

## 7) 기타

### [도서관]

□ 계약제근로자인건비(특수운영직군 종사자) - 결산서 204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증	감				
(정독도서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15,017	0	0	0	415,017	358,033	0	56,984
행정기관교육공무 직원인건비	415,017	0	0	0	415,017	358,033	0	56,984

- 계약제근로자인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미화원, 당직전담원)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8.9.1.자로 기존의 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 승계 전환하여 채용된 근로자임.

- 정독도서관의 2019년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예산액은 4억 1천 5백만원으로 이중 3억 5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5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은 13.7%임.

**[표-72]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항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
전체 : 14명		인건비	345,360	340,835	4,525	1
		건강보험부담금	11,156	9,713	1,443	13
미화원 (무기계약)  12명	당직전담원 (무기계약)  2명	고용보험부담금	5,181	2,966	2,215	43
		국민연금부담금	15,542	548	14,994	96
		산업재해보험료	2,418	3,164	-746	-31
		퇴직급여	34,536	0	34,536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824	807	17	2

- 현재 정독도서관에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가 14명(미화원 12명, 당직전담원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13명이 평균 연령 만65세 이상의 근로자임.
- 한편 국민연금 가입<sup>35)</sup>은 만60세 이후 근로자의 경우 납입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어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정독도서관은 사용자 부담금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불용처리 하였고(불용율 96%), 직접 고용 승계 전환에 따른 계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3천 4백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목의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35)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업무 종사자이면 의무가입 대상이고, 만60세 이후는 부족한 납무 개월 수에 따라 본인 희망에 따라 추가 가입은 가능함.

- 이와 같이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및 이로 인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편성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학교보건진흥원]**

□ 학교급식관리 - 결산서 154쪽

(단위: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용		이체증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학교급식관리	1,771,990	-	-	161,563	1,933,562	1,736,772	-	196,790	10.2
급식실작업환경개선및안전관리	1,419,142	-	-	-	1,426,334	1,418,427	-	7,907	0.6
산업안전보건교육	336,317	-	-	-	336,317	149,758	-	186,559	55.5
산업안전보건운영	16,540	-	-	-	9,348	9,327	-	21	0.2
식생활교육	-	-	-	114,563	106,307	106,009	-	298	0.3
유치원안심급식환경구축	-	-	-	20,000	20,000	18,044	-	1,956	9.8
학교급식위원회운영	-	-	-	3,040	3,040	3,040	-	-	0.0
학교급식품질개선	-	-	-	23,960	32,216	32,167	-	49	0.2

- 2019회계연도 “학교급식관리” 예산은 17억 7천 2백만원이며 이체증가액 1억 6천 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억 3천 4백만원으로, 이중 17억 3천 7백만원이 지출되고, 1억 9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10.2%임.



- 동 사업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불용액은 1억 8천 7백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불용 사유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중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임.
-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해석(‘18.3월)에 따라 학교급식실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교급식종사자(매분기 6시간, 연간 24시간), 학교급식 신규 채용자(8시간),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9년 제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로 관련 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음.

**[표-73]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44	44	0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교육	900	546	354	39.3
<b>관리감독자교육</b>	<b>138,853</b>	<b>0</b>	<b>138,853</b>	<b>100.0</b>
학교급식종사자교육	196,520	149,168	47,352	24.1
합계	336,317	149,758	186,559	55.5

**[표-74]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이수인원
학교급식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19.1,2분기	조리사,조리원,배식실무사	‘19.7~8	4,668명
	‘19.3,4분기		‘20.1~2	5,406명
학교급식종사자 신규채용교육	‘19.3.1자신규	영양사,조리사,조리원	‘19.2	161명
	‘19.9.1자신규		‘19.8	129명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평생진로교육국장	‘19.10.	1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9.5~9	3명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7월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실무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연수를 시행하였으나 서로 관리감독자와 실무자가 아니라며 업무핑퐁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sup>36)</sup> 못하고 2019년 관리감독자 교육 예산 전액을 불용하게 된 것임.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사전에 동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 지정에 갈등이 발생할 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사업추진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교육 등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미 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히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사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교육지원청]

□ 학교환경위생관리(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 - 결산서 217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동부) 학교환경위생관리	26,560	0	0	0	26,560	14,447	0	12,113
교육환경보호 위원회운영	22,800	0	0	0	22,800	10,920	0	11,880

3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양교사·학교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반대」, 식약일보, 2019.5.7.

- 2019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2천 3백만원으로 이 중 1천 1백만원이 지출되고, 1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52.1%임.
- 동 사업은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019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전년 대비 위원회 개최 횟수를 1회 늘려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과도한 불용율과 관련하여 민원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개최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3년간 평균 35%의 지속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 예산편성액과 집행율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속 사업의 경우 과거의 실적에 기초한 추세 분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의 증액을 지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75] 2018~2019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예산현액	22,000	24,000	22,800
지출액	15,200	18,630	10,920
불용액	6,800	5,370	11,880
불용율(%)	30.9%	22.4%	52.1%

□ 공유재산물품관리(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 결산서 221쪽

(단위: 천원)

구 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강남서초) 공유재산물품관리	89,510	0	0	0	89,510	82,889	0	6,621
햇빛발전소사업 활성화	2,200	0	0	0	2,200	0	0	2,200

- 2019년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는 예산액 2백만원으로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 '20대 교육협력사업'의 발표를 통해 2018년도까지 총 500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햇빛발전소를 설립하겠다고 하였음.

[표-76] 햇빛발전소 추진 목표<sup>37)</sup>

(단위 : 교)

추진 방식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협동조합 형	2	25	25	25	25	102
전기발전사업자 형	7	95	95	95	106	398
계	9	120	120	120	131	500

- 그러나 이러한 당초 계획과 달리 햇빛발전소의 설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9년까지 설치된 햇빛발전소는 당초 계

37) '햇빛발전소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교육재정과-9117, 2015.4.

획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130교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2019년도 햇빛발전소 관련 예산도 100% 집행잔액이 발생함.

**[표-77] 햇빛발전소 설치 현황**

(기준 : 2019.8., 단위 : 교)

신청연도	설치	설치(진행)	미설치	합계
2013년	5	0	0	5
2014년	9	0	0	9
2015년	10	0	34	44
2016년	66	5	75	146
2017년	10	6	45	61
2018년	2	12	7	21
2019년	0	5	6	11
총합계	102(34.3%)	28(9.4%)	167(56.2%)	297(100.0%)

**[표-78] 2017~2019년 햇빛발전소 설치 및 불용 내역**

(단위: 교,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	39	8	8
예산현액	3,120	3,000	2,200
지출액	1,553	610	0
불용액	1,567	2,390	2,200
<b>불용율(%)</b>	<b>50.2%</b>	<b>79.7%</b>	<b>100%</b>

- 한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햇빛발전소활성화사업은 교육지역청 내 일선학교의 햇빛발전소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편성된 업무협의회(업무추진비) 및 설치 대상 학교의 현장 점검(여비)예산 그리고 전문가

초청 강사료(연수비)임.

- 그러나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재 학교 햇빛발전소활성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매년 지속적으로 불용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 만큼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할 계획이 아니라면 일선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햇빛발전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에듀케어운영확대) - 결산서 249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복부)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90,632	0	0	0	90,632	66,752	0	23,880
에듀케어운영확대	90,312	0	0	0	90,312	66,558	0	23,754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320	0	0	0	320	194	0	126

- 2019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업은 예산액 9천만 1백만원으로, 이 중 6천 7백만원이 지출되고 2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26.3%임.
- 동 사업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안」 38)에 따라 기존의 ‘에듀케어’에 ‘오후에듀케어’를 추가 신설하여 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38) 교육부,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2018.12.6.

-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오후에듀케어를 신청했던 공립유치원에서 인력구성의 어려움과 학부모 요청 등에 의해 방학 중 오후에듀케어가 미운영 되면서 사업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이 과다 불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동 사업 예산은 오후에듀케어를 신청한 공립유치원 1개원당 운영비 1천 5백만원과 강사료 9백만원, 비품 구입비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당초 신청한 6개원<sup>39)</sup> 중 1개원이 신청을 취소하고 1개원이 운영 중간에 방학 중 오후에듀케어를 미운영 하였음.
- 비록 서울시교육청은 사전 수요조사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유치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중도 포기로 인한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39)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신청 유치원 6개교(서울노일유치원, 동일초병설유치원, 상경초병설유치원, 상곡초병설유치원, 신상계초병설유치원, 수락초병설유치원(추가신청)).

### III.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 주요내용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사용결정액 85억 4천 7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75억 2천 1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천 6백만원이고, 사용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7억 3천만원임.

#### 2. 검토의견

##### 가. 결산총괄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75억 7천만원으로 총 43건의 사업에 85억 4천 7백만원을 사용결정하여 75억 2천 1백만원(88.0%)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천 6백만원, 집행잔액은 사용결정액 대비 8.5%인 7억 3천만원임.

##### 나. 지출결산

###### 1) 예비비 지출 내역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제129조<sup>40)</sup> 및 「지방재정법」 제43조<sup>41)</sup>), 이와 같은 예비비는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40)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것으로 편의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천재 지변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 2019회계연도의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전년도(66억 4천 8백만원) 대비 18억 9천 9백만원(28.6%) 증가하였는바, 조직개편으로 인한 11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신설 및 은명초 화재사고 긴급 지원 비용이 주요 증가 원인임.

**[표-79] 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2019	17,570	29	8,547	7,521	296	730
2018	10,780	33	6,648	5,157	239	1,252
증감	6,790	△4	1,899	2,364	57	△522

- 예비비의 주요 사용 내역은 법무관리 4건(37억 5천 7백만원, 49.9%), 학교신증설 3건(11억 9천 2백만원, 15.9%),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1건(9억 9천 9백만원, 13.3%) 등 총 29건, 85억 4천 7 백만원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위험시설의 예방을 통한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서 평소에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업 예산은 미리 편성하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한편 ‘은명초 화재사고 긴급 지원(임시가설교실 설치)’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은명초 화재사고(2019.6.26.)로 인해 별관동 교실 16실이 소실됨에 따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임시 가설교실을 설치하고자 한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인바, 예비비 집행에 위한 요건에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할 것임.

다만, 당초 예비비 지출을 위한 사용계획 수립시 임시가설교실 설치(20실)를 위해 1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가설교실 설치에 사용된 비용은 8억 9천 9백만원이며,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해 1억 5백만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3억 9천 6백만원(28.3%)은 불용처리 되었음.

이와 같은 불용은 사용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추계함에 따른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편성단계에서부터 지출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비비의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80]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일부 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사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1,016,571	999,211	0	17,360	19.02.11.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학교신증설	53,243	51,027	0	2,216	19.02.13.	상도유치원 이전비용
학교신증설	341,336	238,855	37,665	64,816	19.03.28.	공립유치원 확대 추진계획에 따른 2019. 9. 개원 유치원 신증설설계비
학교신증설	1,403,680	902,301	105,370	396,009	19.07.08.	은명초 화재에 따른 임시가설교실 설치
학생상담 활동지원	24,200	23,265	0	935	19.07.08.	은명초 화재에 따른 학생상담비 지원
학교환경 위생관리	35,470	20,244	0	15,226	19.07.08.	은명초 화재에 따른 유해물질 제거 및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유아교육지원	24,605	24,605	0	0	19.07.08.	은명초 화재에 따른 에듀케어반 정상화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210,210	61,934	0	148,276	19.07.08.	은명초 화재에 따른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정상화
직속기관운영	50,000	49,167	0	833	19.02.13.	2019.3.1.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구성 비품 구입
직속기관운영	27,724	27,723	0	1	19.09.16.	학생체육관 구내식당 화개 보수
직속기관시설관리	300,000	271,632	0	28,368	19.09.10.	남산도서관 옥상 파라펫 보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4,000	64,000	0	0	19.03.06.	당산초교사동(본,후관동)화장실개선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1,333	61,333	0	0	19.03.15.	수도여고 수영장 천정 보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7,318	56,824	0	494	19.03.21.	서울삼일초등학교 조적벽체 보강 및 창호 교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000	63,822	0	16,178	19.05.08.	홍제초 체육관 공조기 교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27,692	72,308	0	19.06.05.	당산중교사동(본,별관동)연결통로구조 보수및보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00	35,000	0	0	19.08.02.	청량중 우수관 교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1,658	27,948	0	3,710	19.09.26.	무학초 석축 및 암반사면 보수 보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3,400	118,512	0	4,888	19.10.10.	장평초 후관동 화장실 구조보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4,916	34,916	0	0	19.10.16.	한울중 체육관 태풍피해 보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1,000	47,830	80,670	2,500	19.10.23.	오류중 옹벽 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20,000	220,000	0	0	19.11.28.	양전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20,000	0	0	19.12.19.	이문초 화장실 타일 보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4,300	14,300	0	0	19.12.26.	독산고 급식실 온수탱크 교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60,000	0	0	19.12.26.	구로중 옥외누수 급수배관 보수
학교환경위생관리	29,100	24,670	0	4,430	19.12.05.	감사원 감사에 따른 공기청정기 성능 검사 의뢰비용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208,610	191,354	0	17,256	19.03.27.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부모 및 학교의 지원금 우선 지원
교육지원청 운영	16,822	16,822	0	0	19.03.28.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
법무관리	19,962	19,962	0	0	19.06.28.	서울상도유치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지역 및 송달료 지출 필요
법무관리	120,000	120,000	0	0	19.09.26.	경희고외 7개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총 4건의 소송비용
법무관리	3,593,533	3,587,031	0	6,502	19.10.02.	건설자금이자 소송변제 공탁
법무관리	29,700	29,700	0	0	19.10.25.	서울상도유치원 손해 산정 감정료(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보전 신청 감정료)
감사관리	9,730	9,453	0	277	19.10.14.	국정감사 수감

## 2)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 학교지원과의 ‘공립유치원 신증설 설계비(학교신증설)’는 슬가람유치원 분원과 우신초병설유치원 외 17개원 등 총 18개원, 28학급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3월 28일 예비비 3억 4천 1백만원이 사용결정 되었으나, 이 중 3천 8백만원 (11%)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됨.
- 이와 같은 사고이월의 원인은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한 방학 중 공사 추진으로 인한 것이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추진 중 학교장 승강기 공사 추가 요청에 따른 것임.
- 이처럼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있어서의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의 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 사유인 이월제도를 남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표-81] 예비비 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사유
학교신증설	공립유치원 신증설 설계비	341,336	238,855	37,665	64,816	19.03.28.	도신초병설유, 우신초병설유(남부) - 학사일정으로 방학 중 공사 추진 방이초병설유(강동송파) - 설계용역 추진 중 학교장 승강기 공사 추가 요청으로 설계 병행추진(용역완수 기간 미도래)
	은명초 임시교실	1,403,680	902,301	105,370	396,009	19.07.08.	은명초 임시교실교실 설치 및 사용완료 후 철거비용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당산중 연결통로 구조보강	100,000	27,692	72,308	0	19.06.05.	공사과정 중 지하철 9호선 터널 천공 관련하여 안전점검 등을 위해 지하철 보수·보강 완료되기까지 공사 중지로 사업기간 장기화
	오류중 응벽개선	131,000	47,830	80,670	2,500	19.10.23.	예비비 배정 후 설계기간 소요 등 사업추진 일정 부족

- 한편,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 ‘공립유치원 신증설 설계비’를 위한 예비비는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도신초병설유치원과 우신초병설유치원의 학급증설을 위한 설계비 부족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사용결정된 것이었으나, 설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동 유치원의 소방공사비로 사용 중 학사일정으로 인한 집행불가로 사고이월한 것임.
  - 또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할 방이초병설유치원도 학급증설을 위한 설계비 부족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예비비가 사용결정되었으나, 동 유치원이 학급증설 이외에 승강기 추가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예비비 전액(1천 9백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이처럼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예비비의 사용결정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예비비 사용의 기본 원칙과 달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집행이나 사업 추진의 지연 등이 원인으로 결국 사고이월로 귀착되었는바, 예비비를 사용결정할 경우에는 예비비의 사용 원칙에 부합한 것인지, 예비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82] 예비비 이월 세부내역 및 사유**

사업명	계약명	지출원인행위		사고 이월액	이월사유
		일자	금액		
공립유치원신증설설 계비(남부)	도신초병설유, 우신초병설유 소방공사	2019-12-18	18,500,000	18,500,000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 추진
공립유치원신증설 설계비(강동송파)	방이초병설유 학급증설공사 설계용역	2019-05-31	19,165,000	19,165,000	설계용역 추진 중 학교 장의 승강기 공사 추가 요청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편성 후 설계 병행추진 예정으로 용역 완수기간 미도래

## IV.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결산 승인안

### 1.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96억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52억 9천 1백만원보다 43억 2천만원(9.5%) 증가됨.

### [표-83] 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율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2019	45,291	4,320	7,820	3,501	49,611	9.5
2018	17,889	27,402	28,369	967	45,291	153.2
2017	5,928	11,962	12,006	44	17,889	201.8

### 2. 검토의견

#### 가.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19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5억 2천 6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452억 9천 1백만원, 이자수입 2억 9천 4

백만원을 포함한 531억 1천 1백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29억 6천 2백만원과 시설비 4천 7백만원, 감리비 4억 9천 2백만원, 예치금 471억 8천 1백만원 등 506억 8천 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2천 9백만원임.

## 나. 수입결산

- 2019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531억 1천 1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sup>42)</sup> 대비 4천 2백만원(0.1%) 감소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억 2천 6백만원, 이자수입 2억 9천 4백만원 및 예치금 회수 452억 9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수입액 중 이자수입은 수입계획보다 4천 2백만원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이자수입의 감소는 정기예금 해지시 금리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만기된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함에 따른 것인바,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표-84]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 자원	수입계획 (A)	적립액 (B)	증감액 (B-A)	주요 증감사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291	45,291	0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	336	294	△42	이율 하락에 따른 정기예금 유지(1.82%이율)로 만기이자 미발생
계	45,627	45,585	△42	

42) 2019.12.16.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의안번호 1210)

## 다. 지출결산

- 2019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지출액은 506억 8천 2백만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24억 7천 2백만원(4.6%) 감소하였고, 이는 설계비 29억 6천 2백만원, 시설비 4천 6백만원, 감리비 4억 9천 2백만원 및 예치금 471억 8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출계획액 531억 5천 3백만원의 4.6%인 24억 2천 9백만원으로, 설계비 16억 1천 8백만원과 시설비 8억 8백만원, 감리비 3백만원으로 구성되는바,
  - 이는 신청사부지에 관한 서울시 경관심의 및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영향 평가의 심의·협의 기간의 장기소요에 따라 설계용역과 철거공사 등 시설공사의 추진 일정이 지연된 것임.
- 따라서 2019회계연도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4조<sup>43)</sup>에 따른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동 기금은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연수원의 건립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추진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히 교육연수원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4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표-85] 신청사 건립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	지출액	이월액
설계비	4,595	2,962	1,618
시설비	2,000	47	808
감리비	950	492	3
시설부대비	50	0	-
계	7,595	3,501	2,429

**[표-86] 기금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사유	계약 기간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2차)	1,618	각종 심의기간 소요에 따른 용역 중지	2019. 2. 22. ~2020. 5. 10.
시설물 철거공사	454	사업완료기한 미도래	2019. 12. 20. ~2020. 4. 21.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354	각종 심의기간 소요에 따른 지연	2019. 12. 30. ~2020. 5. 31.
석면텍스 해체 제거 감리	3	각종 심의기간 소요에 따른 지연	2019. 12. 3. ~2019. 12. 31.
계	2,429		

# V.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 1.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86억 5천 8백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6억 9백만원 및 당해연도 사용액 82억 4천 7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8.9%(16억 3천 9백만원) 감소한 70억 1천 9백만원임.

[표-87]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2019	8,658	△1,639	6,608	8,247	7,019
2018	10,686	△2,028	5,869	7,897	8,658

## 2. 검토의견

### 가. 기금결산 총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44)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45)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

4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로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4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 리·운용하는 기금임

- 2019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 86억 5천 8백만원보다 16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한 70억 1천 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152억 6천 6백만원임.

### [표-88] 공제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계 획				
항 목	계획액 ①	결산액 ②	증 감(②-①)		항 목	계획액 ③	결산액 ④	증 감 (④-③)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4,296	15,266	970	106.8	합 계	14,296	15,266	970	106.8
전입금	6,282	6,075	△206	96.7	비용자성 사업비	8,198	6,826	△1,372	83.3
보조금	332	284	△48	85.5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1,165	1,110	△55	95.3
예치금	7,456	8,658	1,202	116.1	기본경비 (구 물건비)	418	311	△107	74.4
이자 수입	56	85	30	151.8	예치금 (차기이월금)	4,515	7,019	2,504	155.5
기타 수입	170	164	△6	96.5					

### 나. 수입결산

-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수납액(수입결산액)은 152억 6천 6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9억 7천만원(6.8%)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8년 예치금 86억 5천 8백만원과 2019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66억 8백만원으로 구성됨.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계획액 대비 2억 3천 2백만원 (3.4%) 감소한 66억 8백만원으로,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2억 7백만원(3.3%) 감소한 60억 7천 5백만원, 보조금은 수입 계획액 대비 4천 8백만원(14.5%) 감소한 2억 8천 4백만원, 이자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2천 9백만원(51.8%) 증가한 8천 5백만원이며, 기타 수입은 소방수익금이 수입계획액과 동일한 반면 학교 폭력구상금은 6백만원(12%) 감소한 4천 4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6백만원(3.5%) 감소한 1억 6천 4백만원임.

[표-89]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2018년도 수입액	
합 계		14,296	14,296	15,266	15,266	106.8	16,554	
소 계		6,282	6,282	6,075	6,075	96.7	5,518	
전입금	공제료 수입	유치원	185	185	174	174	94.1	165
		초등학교	1,755	1,755	1,686	1,686	96.1	1,446
		중학교	1,687	1,687	1,665	1,665	98.7	1,499
		고등학교	2,545	2,545	2,418	2,418	95.0	2,288
		기타학교	110	110	132	132	120.0	120
소 계		332	332	284	284	85.5	21	
보조금	교육활동참여자공 제료지원금	60	60	113	113	188.3	21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지원금	0	0	0	0	-	0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	272	272	171	171	62.9	0	
소 계		55	55	85	85	151.8	167	
이자 수입	이자수입	56	56	85	85	151.8	167	
소 계		170	170	164	164	96.5	162	

기타 수입	사업수익금(소방)	120	120	120	120	100.0	120
	학교폭력구상금	50	50	44	44	88.0	42
소 계		7,456	7,456	8,658	8,658	116.1	10,686
전년도 이월금 (사고 등)	공제사업이월금	5,944	5,944	6,935	6,935	116.7	8,916
	상담지원이월금	0	0	156	156	-	162
	학교폭력이월금	1,512	1,512	1,567	1,567	103.6	1,608

○ 2019년도 기금조성액 중 전입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공제료가 인상되었음에도<sup>46)</sup>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억 7백만원(3.3%) 감소한 60억 7천 5백만원임.

- 이와 같은 공제료 수입계획과 수입결산의 차이는 공제회에서 수입계획을 수립할 당시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학생수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에 대한 예상치를 통보받아 작성이 되나, 이를 제외한 개별적 납부학교<sup>47)</sup>는 공제회 자체적으로 학생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산출함에 따라 실제 학생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임.
- 이와 같은 수입계획대비 결산의 차이는 교육청에서 공제료를 일괄 납부하기 시작한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 노력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료 수입을 추계함에 따른 것인바,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공제회는 정확한 학생수 추계를 통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46)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공제료, 교육부고시 제2018-167호)

(단위 : 원)

회계연도	유	초	중	고	평균
2019	2,250	3,990	7,980	9,870	6,023
2018	1,950	3,390	6,890	8,550	5,195
2017	1,940	3,370	6,840	8,510	5,165

47) 교육청 일괄납부 대상 : 교육청에서 학생수 산출하여 일괄납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육청 일괄납부 제외 :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재학생수만큼 납부

- 국립학교,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사립국제중학교,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표-90] 학교급별 공제료 수입계획 대비 결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9 계획(A)		2019 결산(B)		증감(B-A)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계	1,007,850	6,282	970,886	6,075	△36,964	△207
유치원	82,129	185	77,610	174	△4,519	△11
초등학교	439,838	1,755	422,344	1,686	△17,494	△69
중학교	211,421	1,687	208,117	1,665	△3,304	△22
고등학교	257,892	2,545	244,633	2,418	△13,259	△127
특수 등	16,570	110	18,182	132	△1,612	22

○ 한편, 보조금 중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sup>48)</sup>은 수입계획 대비 1억 1백만원(37.1%) 감소한 1억 7천 1백만원인바, 이와 같은 차이는 수입계획안 추계시 예상한 판결금과 실제 교육청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임.

- 이처럼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에 정산을 요청하면 교육청은 이를 자체검토 후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의 범위가 매우 유동적이고 이로 인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정확히 추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과 공제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8)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로부터 교육감 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자가 되어 판결금이 확정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교육청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알림”,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615,2018.2.20.  
 법원 판결 → 서울시교육청은 판결금 전체에 대하여 학교공제회에 지급 요청 →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한 판결금 중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정산 요청 → 서울시교육청은 검토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

### 다. 지출결산

- 동 기금의 지출액은 152억 6천 6백만원으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7억 1천 1백만원(4.9%) 증가한 것임.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차기이월금 70억 1천 9백만원을 제외한 2019년도 지출액은 82억 4천 7백만원으로, 공제사업비 64억 1천 8백만원, 예방사업비 2억 6천 3백만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비 1천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3천 5백만원, 인건비 11억 1천만원, 업무추진비 3천 3백만원, 일반운영비 2억 7천 7백만원 등임.

[표-91]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지출 계획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이월액	2018년도 결산액
합계		14,296	14,555	15,266	104.9	312	16,554
비용 자 성 사 업 비	공 제 사 업 비	소계	7,388	7,388	6,418	86.9	6,052
		공제급여 (사고보상비)	6,820	6,820	6,162	90.4	5,879
		보상심사위원회	53	53	33	62.3	28
		소송업무	432	432	201	46.5	140
		비용의 보전	83	83	23	27.7	5
		예방사업비	605	864	263	30.4	30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비	71	71	10	14.1	6
		학교폭력 피해지원	112	135	135	100.0	110
	인 건 비	인 건 비	1,165	1,165	1,110	95.3	944
	기 본 경 비	업무추진비	33	33	33	100.0	
일반운영비		384	384	277	72.1	10	319
차기이월금		4,537	4,514	7,019	155.5		8,658

## 1) 공제사업비

-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 68억 2천만원 대비 90.4%인 61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이와 같이 지급률이 감소한 것은 판결에 따라 공제급여 중 유족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간병급여와 위로금에 대한 지급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임.
- 한편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 당초 계획안(각각 12,500건, 30건)보다 많은 지급건수(각각 13,429건, 39건)를 보였으나, 지출계획현액 대비 1억 8천 8백만원 감소한 61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제급여 지급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지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사업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로 보임.
- 다만 상대적으로 지급률 상승만을 위해 지급대상자 대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제회는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시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합당한 공제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급여지급과 관련한 무분별한 급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표-92] 공제급여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 계획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지출액 증감	2018년 결산액
합계			7,388	7,388	6,419	86.9%	△969	6,600
공	공제급여	소 계	6,820	6,820	6,162	90.4%	△658	5,879



제 사 업 비		요양급여	4,250	4,250	4,223	99.4%	△27	3,268
		장해급여	2,100	2,100	1,939	92.3%	△161	2,611
		간병급여	30	30	0	-	△30	0
		유족급여	400	400	0	-	△400	0
		위로금	40	40	0	-	△40	0
	보상심사 위원회 및 자문	<b>소 계</b>	<b>53</b>	<b>53</b>	<b>33</b>	<b>62.3%</b>	<b>△20</b>	<b>45</b>
		보상심사위원회	33	33	19	57.6%	△14	28
		의료·법률	20	20	14	70.0%	△6	17
	소송업무	<b>소 계</b>	<b>432</b>	<b>432</b>	<b>201</b>	<b>46.5%</b>	<b>△231</b>	<b>123</b>
		소송선임료등	432	432	201	46.5%	△231	123
	비용의 보전	비용의 보전	83	83	23	28.0%	△59	-

[표-93]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소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소송건수	공제급여 지급(청구)액					
		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소송완료	18	1,264	25	1,239	-	0	-
소송 중	17	1,720	-	1,124	-	596	-

## 2) 예방사업비

- 예방사업비는 지출계획액 6억 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5천 9백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 8억 6천 4백만원 대비 30.4%인 2억 6천 3백만원이 지출되고, 3억 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sup>49)</sup>.

49) [지방기금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

○ 이월된 예방사업비 3억 2백만원은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따른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 2억 6천 5백만원(84.9%)<sup>50)</sup>과 기타 홍보 및 달력제작비 4천 7백만원(15.1%)임.

○ 그러나 이월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이미 2018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월된 예산을 이월시킨 것이며, 홍보캐릭터 및 일러스트 잔금은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일부를 집행하지 않았고, 달력제작비는 사업추진시기를 놓쳐 연말에 대금지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이처럼 기금에서의 이월은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제회는 사업의 이월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는 기금 변경을 통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표-94] 기금의 이월 현황

구분	내용	금액(백만원)	비율(%)
1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잔금	220	70.5
2	공제급여 관리 시스템 고도화 비용	41	13.1
3	공제급여 관리 시스템 PMO 계약금	4	1.3
4	교직원 배상책임 홍보 캐릭터 및 일러스트 잔금	4	1.3
5	달력제작 및 배송	33	10.6
6	비품 구입	10	3.2
합계		312	100.0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0) 동 사고이월액은 '공제급여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5억원 중 시스템 완료 후 지급할 2차 잔금임.

### 3)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는 지출계획액 7천 1백만원 대비 14.1%인 1천만원을 지출하였는바,

동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2년간 상담 및 심리지원 실적<sup>51)</sup>이 4건(2017년에는 1건, 2018년 3건)에 불과하여 2019년도 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55.4% 감액 편성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2019년에도 실적이 3건(300백만원)에 불과하였는바,<sup>51)</sup> 서울시교육청과 공제회는 법적으로<sup>52)</sup> 상담지원이 의무화되어 있는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지출액 1천만원 중 실제 지원비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은 홍보비와 회의비로 지출되었음.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